
2024 시정권고 목록

2025. 6.

의결번호	제2024-1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3년 12월 13일 뉴스면 「○○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 누구? 충격 과거 이력(+학력 카톡 프로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성명 등의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한 대학의 사제 간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초상과 성명 등의 신상 정보와 당사자의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통신 내용이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로된 점, 폭로 후 해당 교수의 교원 정보가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황 등을 감안 할 때 문제된 공표 행위에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추정할 여지는 없다. 설령 지역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받은, 일부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더라도,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당사자의 신상정보와 내밀한 사적 통신 내용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및 사적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초상, 성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호	뉴스 포켓	2023년 12월 14일	뉴스면	○○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제자 불륜.. 폭로한 아내 "멈춰달라" 신상 확산 (+얼굴, 카톡 내용)	인터넷신문
제2024-3호	Turbonews (터보뉴스)	2023년 12월 12일	SOCIAL면	○○대 불륜 카톡 "먹고싶다 000"...교수 수업 들어와서 한 말	인터넷신문
제2024-4호	뉴스1코리아	2023년 12월 12일	사회면	"먹고 싶다 000" "궁디광광해주삼"...01년생 여대생·교수 불륜 카톡	뉴스통신
제2024-5호	뉴스속닥	2023년 12월 12일	패스트이슈면	○○대 01년생 인스타 어떻게? '신상·얼굴'까지 확산돼 충격주고 있다.. "0먹고 싶어"	인터넷신문
제2024-6호	디스패치뉴스	2023년 12월 12일	SNSFeed면	"먹고 싶다 000" "궁디광광해주삼"...01년생 여대생·교수 불륜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4-7호	모두서치	2023년 12월 13일	사회면	"오빠 궁디 광광 해줘요, 먹고 싶다.." 충남 천안 ○○대 40대 교수 20대 제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불륜으로...	인터넷신문
제2024-8호	원픽뉴스	2023년 12월 13일	사회면	"먹고싶다".. 01년생 제자와 바람난 ○○대학교 교수의 카톡 내용 공개, 신상까지 털린 현재 상황	인터넷신문
제2024-9호	인터넷 내외일보	2023년 12월 13일	정치사회·세계면	교수 "너 먹고 싶다" → 학생 "오빠는 먹을 생각만"...교수 아내가 폭로한 카톡 '충격'	인터넷신문

■ 제202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0호	커넥트뉴스 (Connect News)	2023년 12월 12일	뉴스면	○○대 40대 교수와 20대 제자 불륜, '섹드립'메세지 공개돼..	인터넷신문
제2024-11호	투데이 플로우	2023년 12월 12일	뉴스면	"먹고싶다000!!"○○대 물리치료과 교수... 01년생 불륜 제자 신상 유출	인터넷신문
제2024-12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2023년 12월 18일		○○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불륜 터진 후 학교 근황되자 모두가 경악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3호	언론사명	김강훈(뉴스 포켓)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 포켓 2023년 12월 04일 뉴스면 「넥슨 뿌리 '페미' 논란 사건 정리·요약과 남성혐오 팀장 '덧서' 신상 공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영상의 남성 혐오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 개인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논란 이후 당사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한 점, 이 사안에 관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실명이 아닌 활동명으로 입장문을 공개한 점, 다른 참석자가 입장문을 대독하고 본인은 불참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문제된 성명 공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이 극단적 성별 혐오 등의 사회적 논란에 관한 것이라도,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4호	CEO 스코어데일리	2023년 12월 4일		넥슨, '젠더 갈등' →민노총 탈퇴 공방 '확산'...혐오논란, '기부 릴레이'로 해소될까	인터넷신문
제2024-15호	뉴스속닥	2023년 11월 28일	스포츠·문화면	○○○ 애니메이터 사진, 스튜디오 뿌리 '남혐 논란'에 과거 공개됐다.. "페미가 나쁘냐"	인터넷신문
제2024-16호	살구뉴스	2023년 11월 28일	뉴스면	넥슨 뿌리 스튜디오 '페미 사건' 요약·정리.. 남혐 직원 '덧서' 신상 공개 (○○○)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7호	언론사명	김강훈(뉴스 포켓)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마이데일리 2023년 12월 04일 「최민환·율희, 최연소 아이돌 부부→결혼 5년만 이혼 “각자의 길 응원”...세아이 양육은 아빠가[MD이슈](종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부부의 이혼 사실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과거에 공표되어 현재 모습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 내용과 무관한 초상 등을 재공표한 것이라도, 부모의 이혼 관련 보도에서의 공표에 대한 자녀 본인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자녀는 연예인 부모와 달리 일반 사인(私人)이며,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고, 해당 보도의 논점 역시 자녀와 무관하다. 자녀의 초상과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8호	뉴스엔	2023년 12월 5일		“교육비 800만원+넷째 욕심” 최민환 율희, 결혼 5년만 이혼→육아 갈등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24-19호	TV Daily (티브이데일리)	2023년 12월 4일		“삼남매 고려”...최민환 율희, 조용한 이혼 조정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20호	살구뉴스	2023년 12월 5일	연예면	최민환 율희 이혼 사유, '양육권 최민환'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첫만남 사주)	인터넷신문
제2024-21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2023년 12월 4일	방송면	최민환·율희, 결혼 5년만 이혼 “세아이 양육권은 父”	인터넷신문
제2024-22호	원픽뉴스	2023년 12월 5일	연예면	"월 800만원 교육비"... 최민환 율희 결국 안타까운 이혼 소식에 교육비 의견 충돌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24-23호	텐아시아	2023년 12월 4일	연예가화제면	[전문] 최민환·율희, 결혼 5년만 이혼..."세 아이는 남편이 양육"[TEN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24호	헤럴드POP	2023년 12월 5일	방송면	[POP초점]'살림남' 최민환-율희 마저 이혼...또 다시 발동 걸린 '부부예능 저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살구뉴스 2023년 12월 19일 뉴스면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95년생 ○○○ '신상·얼굴' 공개, 징역 50년 선고 받은 근황 (+cctv)」 제하의 기사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 사항	대상 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성명, 생년 등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대구관 돌려차기남'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한 유튜버가 무단으로 공개한 피고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재판상 피고인에 그치며,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신상이 공개되었다 하여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중대·흉악 범죄 공표의 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도, 현재 미결 구금 중인 당사자의 신원 공표로 얻어지는 추가 범죄 예방 등의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 등이 아닌 이상 일반 사인(私人)의 초상 등의 신상이 사안 자체에 관한 보도와 동일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 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26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웨어(postshare) 2023년 12월 07일 「가세연 “이선균 폭로한 여실장 ○○○와 래퍼 매드클라운 불륜 관계” 주장」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성명 등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 및 관련인의 사생활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및 협박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사건 당사자의 성명 및 초상, 관련 인물의 사생활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유홍 업소 종업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고,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신상이 공개되었다 하여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또 당사자 초상 일부를 비식별 조치하였더라도, 조치가 미흡하여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 해당 종업원과의 불륜 의혹이 공표된 연예인의 경우, 유명인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연관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적 영역의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이 보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공익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넘는 피고인의 신상, 관련인의 내밀 영역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및 사생활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7호	살구뉴스	2023년 11월 27일	연예면	이선균 마담 ○○○ 통화 녹음 정리, 지드래곤과 삼각관계 폭로된 충격 근황 (+카톡 사진)	인터넷신문
제2024-28호	프리덤 엔라이프	2023년 11월 22일		이선균·지드래곤(GD)의 굿 플레이스 마담 ○○○ 사진 전격 공개... 경찰 “결정적 단서 잡고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4-29호	뉴스속닥	2023년 12월 27일	패스트이슈면	○○○ 마담 얼굴? '인스타'로 시작돼 결국 이선균 유서까지 발견돼.. "오빠, 좋아"	인터넷신문
제2024-30호	엔터스타뉴스	2023년 12월 28일		마담 ○○○, 이선균과 소름돋는 통화 녹취	인터넷신문
제2024-31호	케이데일리	2023년 12월 27일	이슈면	"오빠한테 보내줄 게 있어"...마담 ○○○, 이선균과 소름돋는 통화 녹취 내용에 모두 경악했다	인터넷신문
제2024-32호	패트론타임스	2023년 12월 28일		마담 ○○○, 이선균과 소름돋는 통화 녹취	인터넷신문
제2024-33호	인터넷 NBN미디어	2023년 12월 19일	NBN TV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MBC 실화탐사대 신동엽, 이선균과 굿 플레이스 함께 갔다” 편파방송 파장 확산	인터넷신문

■ 제2024-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4호	뉴스 포켓	2023년 11월 27일	연예면	이선균-○○○ 통화 내용 공개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	인터넷신문
제2024-35호	뉴시스 (NEWSIS)	2023년 12월 30일		'이선균 녹취록' '상간녀 신상 공개'...금주의 핫이슈[튜브가이드]	뉴스통신
제2024-36호	데일리안	2023년 12월 27일	사회면	故 이선균 사생활 폭로한 가세연에 '비난 봇물'...유흥업소 실장 주장 녹취록 계속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37호	엔터타임즈	2023년 11월 23일		'굿플레이스 K실장 정체 ○○○' 가세연 이선균 의혹 조명	인터넷신문
제2024-38호	오토트리뷴	2023년 12월 28일	뉴스면	"안타깝지만 마약 범죄자일 뿐"... 가세연, 이선균 사망 직전에도 녹취록 공개해 '경악'	인터넷신문
제2024-39호	국제뉴스	2023년 11월 25일	연예면	가세연 "지드래곤-이선균-○○○ 삼각관계" 여실장 얼굴 공개	뉴스통신
제2024-40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2023년 12월 28일		가세연, ○○○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1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3년 11월 27일 뉴스면 「두 눈에 피멍, 코에는 핏자국...“사람 세X 맞냐?” 6개월 아기 폭행한 20대男 신상 털렸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초상 및 학대 혐의자의 성명과 초상 등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 아동의 초상 및 학대 혐의자의 성명과 초상 일부 등을 공표하였다. 위 기사가 인용한 방송 보도가 피해 아동 초상의 대부분을 비식별조치하고 가해 혐의자들의 신상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달리, 해당 보도는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등이 특정 되도록 보도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이 언론 보도를 금지한 사항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이는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초상을 공표하여 피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한 것은 향후 아동이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는 등 2차 피해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등 공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2호	언론사명	(주)전자신문인터넷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전자신문인터넷 2023년 12월 07일 「[관망경] 붕어빵과 절름발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의료계 현안에 관한 대립 양상을 보도하면서, 의료 복지의 지역 편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절름발이'에 빗대 표현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은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각종 보도준칙,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3호	전자신문	2023년 12월 8일	27면 (오피니언)	[관망경] 붕어빵과 절름발이	중앙일간지
제2024-44호	골프타임즈	2023년 10월 30일	라이프면	[건강라이프] 언어발달장애 앓는 아이, 상대 이야기에 집중 떨 어지는 것. 청력 문제일까?	인터넷신문
제2024-45호	프레스리안 (Pressian)	2023년 12월 18일	전국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사태 전주시·일부 시의원·언론 꿀먹은 벼어리"	인터넷신문
제2024-46호	인터넷 주간 세종신문	2023년 12월 19일	오피니언면	결정 장애로 인한 고민 해결	인터넷신문
제2024-47호	컨슈머와이드	2023년 11월 17일	가치소비뉴스면	[가치소비-현장포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정장애 오네, 다 살까봐 " .. 체리x야나 자선 바자회	인터넷신문
제2024-48호	KJA뉴스통신	2023년 12월 14일		나주시 나주교통에 연간 200억 지급 보조금은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49호	인터넷 광남일보	2023년 12월 17일	사회면	[만년필]질투심에 눈 먼 50대	인터넷신문
제2024-50호	광남일보	2023년 12월 18일	06면(사회)	질투심에 눈 먼 50대	지역일간지
제2024-51호	국제신문	2023년 12월 5일	06면(사회)	리베이트에 눈 멀어 강릉전세 사기 가담 70대 징역 1년6개월	지역일간지

■ 제2024-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2호	뉴데일리 (New Daily)	2023년 12월 12일	사회면	'국민 목숨' 불모 삼는 의협 총파업... "밥그릇에 눈 먼 집단이기주의" 비판 쇄도	인터넷신문
제2024-53호	뉴스1코리아	2023년 12월 7일	정치면	정부 지원·보조금은 눈먼 돈?...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종합)	뉴스통신
제2024-54호	뉴시스 (NEWSIS)	2023년 12월 15일	국제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40~45%가 '눈먼 폭탄'" CNN[이-팔 전쟁]	뉴스통신
제2024-55호	매경닷컴	2023년 12월 31일	경제면	경주 방폐장에 보조금 5조 '뽕뽕'...눈먼 돈으로 유지되는 원전생태계	인터넷신문
제2024-56호	메트로신문	2023년 12월 28일	정치&정책면	[M-커버스토리]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세비 투입, 특권에 눈먼 사람들만 정치권으로	인터넷신문
제2024-57호	법률방송뉴스	1월 1일	법조·사회면	사표 수리 안됐는데도 "총선 출마"선언... 금배지에 눈먼 검사들	인터넷신문
제2024-58호	새전북신문	1월 5일	10면 (사설/칼럼)	[사설] 전북 국고보조금 눈먼 돈이 아니다	지역일간지
제2024-59호	인터넷 새전북신문	1월 3일		[사설] 전북 국고보조금 눈먼 돈이 아니다	인터넷신문
제2024-60호	스포탈코리아	2023년 12월 24일		불륜남 김영재, 이영애 권력에 눈 멀어 협박+파트너 제안('마에스트라') [Oh! 쎬 리뷰]	인터넷신문
제2024-61호	시사파일	2023년 12월 7일	정치면	정부 지원·보조금은 눈먼 돈?...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에 달해	인터넷신문
제2024-62호	아시아경제 닷컴	2023년 12월 29일	사회면	"아파트 관리비는 눈 먼 돈?"...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인터넷신문
제2024-63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1월 10일	사회면	금배지에 눈먼 판·검사들...“공직자 출마 유예기간 늘려야”	인터넷신문
제2024-64호	아이뉴스24 (inews24)	1월 9일	전국면	진안군, 전북형 취업지원사업 보조금은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65호	안동인터넷뉴 스	2023년 12월 11일	정치행정면	안동시, 눈먼 행사보조금 없앤다...내년부터 '시민평가단' 도입, 성과부진 사업 퇴출도	인터넷신문
제2024-66호	에이빙 (AVING)	2023년 12월 13일	산업면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서 구글에 승소... "수수료 욕심에 눈먼 구글, 경쟁과 발전은 언제?"	인터넷신문
제2024-67호	오에스이엔 (OSEN)	2023년 12월 24일	연예면	불륜남 김영재, 이영애 권력에 눈 멀어 협박+파트너 제안('마에스트라') [Oh! 쎬 리뷰]	인터넷신문
제2024-68호	인터넷 이데일리	1월 10일	문화면	출판계 `도넛은` 표지 베끼기...인기에 눈먼 출판윤리	인터넷신문
제2024-69호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1월 3일	열린뉴스면	'눈먼 돈' 국고보조금 편취 무더기 검거	인터넷신문

■ 제2024-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0호	전주일보	1월 3일	07면(사회)	줄줄새는 국고보조금, 눈먼 돈 ‘꿀깍’	지역일간지
제2024-71호	인터넷 전주일보	1월 2일	사회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전북서 442억 부정수급 121명 검거	인터넷신문
제2024-72호	조선닷컴	1월 1일	사회면	사표 수리 안됐는데 줄줄이 “총선 출마”... 금배지에 눈먼 검사들	인터넷신문
제2024-73호	조선일보	1월 1일	10면(정치)	사표 수리 안됐는데 줄줄이 “총선 출마”... 금배지에 눈먼 검사들	중앙일간지
제2024-74호	인터넷 한국경제	2023년 12월 27일		해저 자원에 눈 멀어...마음대로 ‘대륙붕 영토’ 늘린 美	인터넷신문
제2024-75호	한국일보	2023년 12월 28일	26면 (오피니언)	[메아리] 눈 먼 자들의 정치	중앙일간지
제2024-76호	인터넷 한국일보	2023년 12월 27일	오피니언면	[메아리] 눈 먼 자들의 정치	인터넷신문
제2024-77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6일	사설면	[사설]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인터넷신문
제2024-78호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6일	31면 (사설/칼럼)	[사설]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제2024-79호	언론사명	(주)고양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주간 고양신문 2023년 12월 03일 건강·의료면 「구강·건강검진을 ‘한곳에서’, 기능의학 접목 개인 맞춤형 건강 증진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0호	이로운넷	2023년 11월 27일	기후·생명·평화 면	○○○○○○안과, 혁신에 속도 더한 ‘스마일 프로’ 도입	인터넷신문

■ 제2024-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1호	인터넷 용인신문	2023년 12월 11일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병원 '유명세'	인터넷신문
제2024-82호	인터넷 충부매일	2023년 12월 10일	라이프면	음성읍 '○○○○ 정형외과·내과의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3호	온라인 충청일보	2023년 12월 10일	충북면	음성 ○○○○ 정형외과·내과의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4호	충청타임즈	2023년 12월 11일	07면	○○ ○○ 정형외과·내과의원 '문 활짝'	지역일간지
제2024-85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2023년 12월 10일	지역면	○○ ○○ 정형외과·내과의원 `문 활짝'	인터넷신문
제2024-86호	중도일보	2023년 12월 18일	08면	사전검사부터 재활까지 충실... 지역민 건강 '탄탄하게'	지역일간지
제2024-87호	인터넷 중도일보	2023년 12월 17일	사회교육면	[인터뷰] 김용인 ○○○○○병원장 "수술 잘하는 것만큼 사전검사와 재활에 충실"	인터넷신문
제2024-88호	충청뉴스	2023년 11월 9일	의료복지면	대전 ○○○병원 확장 이전...12월 4일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4-89호	인터넷 충남일보	2023년 11월 28일	사회면	○○○○○○병원, 개원 16주년 기념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90호	언론사명	홍서희(투데이 플로우)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투데이 플로우 2023년 11월 25일 연예면 「'아스트로' 차은우, 日 시상식서 흥기 난동 "복부 찢려 중상"... 범인의 행방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 2023' 시상식에 참석한 유명인 차은우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맥락과 무관한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91호	언론사명	홍서희(투데이 플로우)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투데이 플로우 2023년 12월 23일 연예면 「물어보살 채장암 4기 故최성희 '상간녀'...84년생 한X주 신상 근황 공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등의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된 불륜 사연을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상간녀의 신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공표된 성명 및 신상 일부가 유튜브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으며, 불륜 사건 보도에서 성명 등의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할 여지도 없다. 설령 이 보도가 세간의 관심을 받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아닌 특정 사인(私人)의 신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공표는 성명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91호	살구뉴스	2023년 12월 26일	뉴스면	'물어보살' 채장암 최성희, 상간녀 신상 공개 '84년생 한X주'...남편은 주짓수 관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93호	언론사명	김성용(뉴스속닥)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속닥 2024년 01월 10일 패스티슈면 「강경준 부동산 사진, '유부녀 신상'에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유출 됐다.. "넌 사랑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사적 통신 내용 및 미성년 자녀 초상을 공표하였다. 공표된 통신내용이 대화자만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수단에 의한 대화라는 점, 당사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주요 논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연예인 당사자는 이미 알려진 공적 인물이고, 그의 장남은 배우 지망생으로 미디어 노출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차남의 경우 SNS, 방송 동반출연 등을 통해 초상이 공개되었다는 것 만으로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없다. 부모의 불륜 보도에서의 초상 공표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성교제에 관한 사적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으며, 보도 논점과 무관한 사인(私人)인 미성년 자녀의 초상을 공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제1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94호	위키트리 (Wikitree)	1월 8일	엔터면	'상간남 피소' 강경준...아내 장신영 현재 심경이 날날이 공개됐다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95호	sportschosun.com	1월 7일	연예면	[단독] "보고싶다" "안고싶네"..강경준·불륜의혹 유부녀 A씨 대화내용 입수	인터넷신문
제2024-96호	뉴스 포켓	1월 8일	연예면	강경준, '상간남 피소' 오해라더니 유부녀에 "안고싶네, 사랑해" 텔레그램 공개 (+대화내용)	인터넷신문
제2024-97호	살구뉴스	1월 13일	연예면	"애인있어도 키스" 강경준 상간녀 신상 공개, 충격 발언 재조명.. (얼굴 인스타 사주)	인터넷신문
제2024-98호	스타뉴스 (star news)	1월 8일	방송면	"천성이 여린 바보" 장신영 눈물..강경준, 불륜 침묵 언제 깨나[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99호	엔터타임즈	1월 12일	방송·연예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장신영 ♥강경준 이렇게나 믿었는데 결과는 불륜·상간남	인터넷신문
제2024-100호	원픽뉴스	1월 9일	연예면	"감정적으로 격해져 눈물"... 강경준 불륜 문자 본 '장신영' 근황 공개에 모두 오열했다	인터넷신문

■ 제2024-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01호	인디뉴스	1월 8일	연예면	강경준, "술 안먹고 같이 있고 싶어" 불륜 의혹과 사랑꾼 이미지의 추락 유부녀 대화 내용 첨부	인터넷신문
제2024-102호	조선닷컴	1월 8일	연예면	[단독] "보고싶다" "안고싶네"..강경준·불륜의혹 유부녀 A씨 대화내용 입수	인터넷신문
제2024-103호	커넥트뉴스 (Connect News)	1월 10일	방송/연예면	강경준, 유부녀와 주고받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공개되다	인터넷신문
제2024-104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1월 9일		장신영, 강경준 '불륜' 카톡에 충격 "눈물 흘려...전남편에도 퍼주더니"	인터넷신문
제2024-105호	인터넷 일요시사	1월 15일	인물면	<이슈&인물> 유부녀 '불륜 스캔들' 강경준	인터넷신문
제2024-106호	텐아시아	1월 22일	드라마·예능면	장신영 자, '고려 거란 전쟁' 엑스트라 출연...'상간남 피소' 강경준은 침묵ing [TEN이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07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1월 14일 뉴스면 「충격적인 불륜 '본업과 주유' 주인공 신상 및 얼굴 공개에 모두가 경악한 이유 (+요약)」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등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모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륜 사건을 바탕으로한 인터넷 소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존하는 일반 사인(私人)이 소셜 속 인물로 연상되도록 당사자들의 성명 등 신상 및 사적 통신내용을 공표하였다. 성명 대부분을 가명으로 보도했다 하더라도, 실명과 거의 유사한 가명을 소속 관서 등의 구체적 정보와 함께 공표하여 당사자들이 충분히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사 일부에서는 실명을 공표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추정할 여지는 없다. 설령 이 사안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관계 등의 내밀한 사적 통신 내용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고,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성명이나 신상을 공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이 해당 불륜 의혹의 실제 인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및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들의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제1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08호	국제뉴스	1월 13일	사회면	소설 '본업과 주유' ○○○·○○○ 정체 놓고 온라인 들쭉	뉴스통신
제2024-109호	뉴스속닥	1월 13일	패스트이슈	대전 서구청 ○○○ 얼굴? 공무원 '바람' 사건에 신상·페이스북 확산.. "또X 물어봐"	인터넷신문
제2024-110호	뉴스 포켓	1월 15일	뉴스면	대전 서구청 불륜 '본업과 주유' 공무원들 얼굴·신상 밝혀진 가운데 현재 상황	인터넷신문
제2024-111호	엔터타임즈	1월 15일	종합이슈면	[영상]소설 '본업과 주유' 스포? 실화여부 확산,	인터넷신문
제2024-112호	투데이 플로우	1월 14일	뉴스면	대전 서구청 '본업과 주유', 주차행정과 공무원 사생활 불륜 사건 신상·얼굴에 모두 경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13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3년 12월 27일 사회면 「"女환자 10명 얼굴에 성기 대고 인증샷"...'롤스로이스男' 마약의사 체포 경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의사의 신상을 공표하였다. 보도 상 성명 및 초상을 비식별 조치했지만, 성명의 성(姓), 학력, 이력, 의료기관의 상호 및 표장 등을 함께 공표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속 기소된 해당 의사의 보도 당시 형사상 신분은 피의자에 불과하며, 유명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여지는 없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공익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인(私人)의 신상이 사안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 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14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2023년 12월 27일	뉴스면	'롤스로이스男' 마약 준 의사 휴대폰엔...잠든 女환자들 '성폭행 몰카'	인터넷신문
제2024-115호	뉴스 포켓	2023년 12월 28일	뉴스면	'롤스로이스 男'에게 마약 처방한 의사, 여성 환자들 불법 촬영에 성폭행까지	인터넷신문

■ 제2024-1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16호	디스패치뉴스	2023년 12월 27일		"女환자 10명 얼굴에 성기 대고 인증샷"...'롤스로이스男' 마약의사 제보 폭주	인터넷신문
제2024-117호	원픽뉴스	2023년 12월 27일	사회면	"수면 마취 후 잠든 여성 얼굴에 성기를"..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의사의 불법 촬영에 모두 경악	인터넷신문
제2024-118호	인터넷 충남일보	2023년 12월 27일	종합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 처방 의사, 성범죄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4-119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2023년 12월 27일		"피해자 극단적 시도"...'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女환자 성폭행·불법촬영까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20호	언론사명	김강훈(뉴스 포켓)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뉴스 포켓 2024년 01월 03일 연예면 「이선균 협박녀 ○○○ 영화 출연했던 배우로 알려져 충격 (+신상,얼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성명 등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 및 당사자의 통신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및 공갈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튜브 채널들이 공개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 초상, 사적 통신내용을 공표하였다. 현재 당사자들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고,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당사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을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당사자 일부가 과거 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짧은 활동 후 장기간 동안 공개적 활동을 한 바 없어 과거 이력만으로 공적 인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 공표된 통신내용이 대화자만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수단에 의한 대화라는 점, 당사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주요 논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의 경위를 넘어 피고인에 불과한 당사자들의 구체적 신상 및 사적 통신내용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및 통신내용 공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하고 성명권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1항, 제1조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2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21호	IK미디어	2023년 12월 31일	연예면	"이선균 협박녀" 영화 배우 출신 미혼모 '○○○' 얼굴 사진과 신상공개되자...(+출연 영화)	인터넷신문

■ 제2024-12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22호	뉴스속닥	1월 1일	패스트이슈면	"저 XX랑.." 이선균 협박 실장 얼굴, '신상·인스타' 모두 공개되어 심각한 상황	인터넷신문
제2024-123호	살구뉴스	2023년 12월 30일	연예면	이선균 협박녀 P 박소정 신상...충격 과거 썸다 밝혀졌다(+○○○ 인스타)	인터넷신문
제2024-124호	원픽뉴스	2023년 12월 31일	연예면	"재앙의 시작"... 이선균 협박녀 신상, 95년생 미혼모 '배우 ○○○'으로 밝혀지자 모두 경악했다	인터넷신문
제2024-125호	인디뉴스	2023년 12월 31일	연예면	"이선균 협박녀"故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 배우 ○○○, 구속 결정	인터넷신문
제2024-126호	커넥트뉴스 (Connect News)	2023년 12월 31일	뉴스면	이선균 협박범 배우 ○○○ 신상..충격 과거 밝혀지다.	인터넷신문
제2024-127호	킹n퀸뉴스	1월 13일	비즈·엔터면	故이선균 협박女 ○○○ 째 팔아 강남 호화관 생활...카라콜라 시즌 두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4-128호	투데이 플로우	1월 1일	연예면	'이선균 협박범' 박○정 뜻밖의 범행 동기 밝혀 '충격'..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신문
제2024-129호	서울포스트	1월 14일		[서울포스트뉴스논평] ○○○,○○○이라는 꽃병에 당한 이선균 사망을 경찰 정보 유출로만 몰아가는 미친놈들.. [기사] 봉준호·윤종신 등 "故 이선균, 인격살인 당해...진상규명 촉구"	인터넷신문
제2024-130호	모두서치	1월 1일	뉴스면	이선균 협박녀 업소 실장 마약 증거 경찰에 제보한 이유가... '이것' 때문...	인터넷신문
제2024-131호	위키트리 (Wikitree)	1월 3일	엔터면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배우 출신 여성이 현재 구치소에서 벌이고 있는 일	인터넷신문
제2024-132호	엔터타임즈	1월 18일	방송·연예면	故 이선균 마약 혐의, 최초 제보는 배우 출신 협박범 ○○○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33호	언론사명	(주)데일리안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데일리안 2024년 01월 12일 경제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외식업계 "병어리 냉가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외식 업계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이를 '병어리 냉가슴'에 빗대 표현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34호	데일리메디	1월 22일	뉴스면	의료기기 업계, 병어리 냉가슴...가납으로 '도산' 위기	인터넷신문
제2024-135호	시사ON	1월 12일	뉴스면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선 거래 불가”...수수료 무료 거래소들 '병어리 냉가슴'	인터넷신문
제2024-136호	시사오늘	1월 30일	43면(경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선 거래 불가” 수수료 무료 거래소들 '병어리 냉가슴'	주간지
제2024-137호	인터넷 시사저널	1월 31일	경제면	보험사, 당국 압박에도 성과급 확대...은행권은 '병어리 냉가슴'	인터넷신문
제2024-138호	광전매일신문	1월 15일	01면(종합)	광주 광산문화회관 "속 빈 강정" 혈세 낭비 국세·지방세 "눈 먼 돈, 무책임" 쓰고 보자	지역일간지
제2024-139호	뉴스에듀 (newsedu)	1월 31일	사회면	나랏돈은 '눈 먼 돈'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인터넷신문
제2024-140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1월 18일	경제면	"R&D 예산=눈 먼 돈?"...정부, 대형과제 중심으로 혁신	인터넷신문
제2024-141호	디지털타임스	1월 19일	06면(정책)	"R&D 예산=눈 먼 돈?"...정부, 대형과제 중심으로 혁신	지역일간지
제2024-142호	머니투데이	2월 1일	02면(종합)	22대 총선 선거보전금 '역대 최대' 중복지급 '눈 먼 돈' 수백억 달할듯	중앙일간지
제2024-143호	인터넷 서울경제	1월 28일	정치면	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인터넷신문
제2024-144호	서울경제	1월 29일	06면(정치)	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중앙일간지

■ 제2024-1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45호	아시아 경제닷컴	1월 18일	정치면	[포토] 한동훈 “출판기념회 ‘눈 먼 정치자금’ 막는다…개정안 낼 것”	인터넷신문
제2024-146호	인터넷 이데일리	1월 18일	정당면	한동훈 “출판기념회 ‘눈 먼 정치자금’ 막는다…개정안 낼 것”	인터넷신문
제2024-147호	인터넷 일간경북신문	1월 30일	경북면	체육회 돈은 눈먼 돈...경북 지자체 체육회 ‘잇단 비리’	인터넷신문
제2024-148호	일간경북신문	1월 31일	01면(종합)	체육회 돈은 눈먼 돈...경북 지자체 체육회 ‘잇단 비리’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4-149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1월 11일 스포츠면 「최홍석 안타까운 사망 이유, 원인.. 남겨진 부인·자식들은 어쩌나 (SNS, 인스타그램)」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 유족의 성명을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전직 유명 배구선수의 자살 추정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최근까지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널리 알려졌던 사망자와 달리,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 설령 세간의 관심을 받을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아닌 유족들의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미성년 자녀들의 인격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성명 공표는 당사자들의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150호	언론사명	기술법인중용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매일안전신문 2024년 01월 09일 종합뉴스면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소아 당뇨 딸, 너무 힘들어 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보도가 사망자들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이, 거주지, 지역사회 활동 내역 등을 결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 이 보도가 사회의료 복지 확충 등의 공익적 논의를 촉발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들을 공적 인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 자체의 경위가 아닌 사망자의 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적 정보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51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1월 9일		"당뇨에 딸, 힘들어 해" 숨진 태안 일가족…車엔 유서만	인터넷신문
제2024-152호	IBS중앙방송	1월 9일	사회면	[사건사고] "딸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소아당뇨 앓는 딸 치료하며	인터넷신문
제2024-153호	인터넷 국민일보	1월 9일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딸 아파해 힘들어”	인터넷신문
제2024-154호	뉴스시스 (NEWSIS)	1월 9일	지방면	"딸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4-155호	동아닷컴	1월 10일	사회면	“8세 딸 소아당뇨에 너무 힘들다”…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156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1월 9일	사회면	"아픈 딸 너무 힘들어해"..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157호	비즈N	1월 10일	최신뉴스면	“8세 딸 소아당뇨에 너무 힘들다”…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158호	산경일보	1월 10일	05면(사회)	“딸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24-159호	인터넷 세계일보	1월 9일	사회면	소아 당뇨 7살 딸 키우며 성실했던 부부 경제적 고통 호소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 제2024-1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60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1월 9일	사회면	아픈 딸 간병 태안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지인이 쓴 글 안타까움 더해	인터넷신문
제2024-161호	인사이트	1월 9일	사회면	"딸 아파해 힘들다"...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162호	조선닷컴	1월 9일	사회면	일가족 3명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유서엔 "딸 아파서 힘들어"	인터넷신문
제2024-163호	인터넷 주택건설신문	1월 9일	전국면	"딸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164호	인터넷 중앙일보	1월 9일	사회면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유서엔 "9살 딸 아파서 힘들다"	인터넷신문
제2024-165호	케미컬뉴스	1월 9일	C-News면	태안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합동 장 부탁한다"	인터넷신문
제2024-166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월 9일	사회면	"아픈 딸 너무 힘들어해"..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167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이선균 사망..전혜진에 남긴 유서 내용에 모두 오열했다(+사망이유 자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묘사하는 유서 문구 및 자살 사망자 유족의 초상, 성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자살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묘사하는 문구의 유서를 보도하였다. 유서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자살을 고통을 해소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표현하는 문구의 보도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유사한 처지의 일부 독자들이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므로, 모방 자살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위 기사는 유족인 자녀들의 초상과 이름을 공표하였다. 배우자의 경우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자녀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여 공적 인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사인(私人)인 자녀들의 초상과 이름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미성년 자녀의 성명 및 초상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3항, 제14조1항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16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68호	e-울산매일신문	2023년 12월 28일	오피니언면	[현장소리] 개인 존중 보도와 올바른 뉴스 향유 자세	인터넷신문
제2024-169호	sbs연예뉴스	1월 4일	스타면	故 이선균 유서 보도 TV조선 기사 결국 삭제...소속사 "진심어린 사과 바란다"	인터넷신문
제2024-170호	sportschosun. com	2023년 12월 29일	연예면	故이선균, 눈물의 발인식..영정 든 아들·아내 전해진 배우 속 영면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171호	TV Daily (티브이데일리)	2023년 12월 28일		故 이선균, 이틀째 추모 행렬...유인촌 장관→문근영 조문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172호	고발뉴스닷컴	2023년 12월 30일	오피니언면	‘경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줬다’ 이선균 죽음에 사회적 흥기된 언론	인터넷신문
제2024-173호	국제뉴스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유족 원치 않아" 故 이선균 유서내용 공개한 방송사 못매	뉴스통신
제2024-174호	글로벌픽콘 (Global Pickcon)	2023년 12월 28일	뉴스면	故 이선균, 아내 전해진에 남긴 유서 일부 공개...소속사 측 "허위 사실"	인터넷신문
제2024-175호	인터넷 납도일보	2023년 12월 28일	뉴스면	이선균,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어쩔 수 없다’ ‘이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인터넷신문
제2024-176호	뉴데일리 (New Daily)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이선균 협박해 5000만원 뜯은 20대女... 구속심사 전 도주하다 체포	인터넷신문
제2024-177호	뉴스핌통신	2023년 12월 28일	문화·연예면	고 이선균 측 "모든 장례 일정 비공개...막무가내 방문 고통 커"	뉴스통신
제2024-178호	뉴시스 (NEWSIS)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이것 밖에 방법이"...이선균,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뉴스통신
제2024-179호	인터넷 대구매거진	2023년 12월 29일	종합뉴스면	이선균, 마약검사 음성...임계점까지 몰아간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4-180호	대전일보닷컴	2023년 12월 28일	뉴스면	이선균, 아내 전해진에 남긴 마지막 말 "이것밖에 방법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181호	더팩트	2023년 12월 28일	NEWS면	"이것밖에 방법 없어"...이선균, 아내 전해진에 남긴 말	인터넷신문
제2024-182호	데일리스포츠 월드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故 이선균 유서에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183호	데일리안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故 이선균, 전해진에 남긴 유서 보니..."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184호	디스패치뉴스	1월 4일	NEWS면	TV조선, 이선균 기사 삭제..."위약금 미안하다는, 허위"	인터넷신문
제2024-185호	로톡뉴스	2023년 12월 28일	이슈면	이선균이 아내 전해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인터넷신문

■ 제2024-16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186호	마이데일리	1월 5일		TV조선, '故 이선균 유서 보도' 기사 삭제...고소 이틀만	인터넷신문
제2024-187호	메가경제	1월 5일	엔터테인먼트면	논란된 '이선균 유서 보도', 8일만에 삭제돼...'갑론을박' 여전	인터넷신문
제2024-188호	모두서치	2023년 12월 28일	뉴스면	이선균 유서 유족도 공개하지 말했는데... 유서 공개한 방송사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4-189호	미디어파인	2023년 12월 28일	KPOPSTAR면	이선균, 유서 내용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190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29일	사회면	故이선균 오늘 영면.."막무가내 방문, 멈춰달라"	인터넷신문
제2024-191호	뷰티한국	2023년 12월 28일	Star면	이선균 유서 위약금 언급, 100억원대 위약금 부담감에 "미안하다" 적어	인터넷신문
제2024-192호	비엔티뉴스	2023년 12월 28일	Culture면	이선균, 전해진에 남긴 마지막 말...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	인터넷신문
제2024-193호	비전티브이뉴스 (비전TV뉴스)	2023년 12월 28일		故 이선균, 유서 일부 공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194호	인터넷 서울경제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이것밖에 방법이..." 이선균, 아내 전해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인터넷신문
제2024-195호	서울와이어	2023년 12월 29일	방송/연예/스포츠면	극단선택 이선균 "이것밖에 방법없다"...광고위약금 100억대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196호	셀럽미디어	1월 4일	연예면	TV조선, 故 이선균 유서 단독 보도 삭제	인터넷신문
제2024-197호	스타뉴스 (star news)	2023년 12월 27일	엔터테인먼트면	故이선균 유서 공개..아내 전해진에 "어쩔 수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198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1월 5일	연예면	고 이선균 측 고소에 TV조선 '유서보도' 삭제...사과도 이어지나	인터넷신문
제2024-199호	스포츠 투데이M	1월 4일	연예면	TV조선, 이선균 유서 단독기사 삭제	인터넷신문
제2024-200호	스포탈코리아	2023년 12월 28일		故이선균 유서 공개..아내 전해진에 "어쩔 수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201호	스포티비뉴스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이선균 "이것밖에 방법 없다"...유족 원하지 않은 유서 내용 어떻게 나왔나	인터넷신문
제2024-202호	슬로우뉴스	2023년 12월 29일	오피니언면	변개탄, 유서, 언론의 조희수 장사는 끝나지 않았다	인터넷신문
제2024-203호	시민언론민들레	2023년 12월 28일	미디어비평면	'패륜' 조선일보, 이번엔 TV조선이 이선균 유서 공개	인터넷신문

■ 제2024-16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04호	인터넷 아주경제	2023년 12월 28일		이선균 사망 소식 이후 'TV조선 유서 공개' 비난 폭주	인터넷신문
제2024-205호	엣스타일 (atstar1)	2023년 12월 28일	ENTERTAIN MENT면	유독 밝은 故 이선균의 마지막...아내 전해진에 "어쩔 수 없다" 유서	인터넷신문
제2024-206호	엑스포즈뉴스	2023년 12월 27일	연예면	"어쩔 수 없다" 故 이선균, 아내 전해진에 남긴 유서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207호	엠케이스포츠 (MK스포츠)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이것밖에 방법이"...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게 남긴 마지막 말 [MK★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208호	인터넷 영남일보	2023년 12월 28일	연예	故 이선균, 전해진과 소속사에 남긴 유서에 "방법이 이것밖에...미안하다"	인터넷신문
제2024-209호	오마이뉴스 (OhmyNews)	2023년 12월 29일	미디어면	이선균 사망 후에도 '비정한 보도' 계속됐다	인터넷신문
제2024-210호	오에스이엔 (OSEN)	2023년 12월 27일	엔터테인먼트 면	故 이선균, ♥전혜진에 남긴 유서 "어쩔 수 없어..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211호	우리뉴스	2023년 12월 28일	오피니언면	[이슈&논] "어쩔 수 없다" 말 남기고 떠난 이선균씨...과도한 미디어노출 자제해야	뉴스통신
제2024-212호	원픽뉴스	2023년 12월 27일	연예면	"이것밖에는 방법이"... 위약금까지 언급한 '이선균 유서 내용' 공개되자 모두 오열했다	인터넷신문
제2024-213호	위키트리 (Wikitree)	2023년 12월 27일	엔터면	"미안하다..." 마약 혐의 故 이선균, 아내에게 남긴 유서 공개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214호	인터넷 이데일리	2023년 12월 28일	영화면	故 이선균 소속사 측 "이후 장례일정 비공개...기습 방문 고통 커"[전문]	인터넷신문
제2024-215호	이슈앤비즈	2023년 12월 28일	연예·스포츠면	故 이선균 아내 전해진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이것밖에 방법이..."...빈소에 영화계 동료 조문 행렬	인터넷신문
제2024-216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2023년 12월 28일	연예일반면	故 이선균, 유서 일부 공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217호	조선닷컴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아내에 남긴 메모엔 "이것밖에 방법이"...이선균 빈소 추모 행렬	인터넷신문
제2024-218호	조선비즈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故 이선균, 아내 전해진에 남긴 유서 일부 공개...소속사 측 "허위 사실"	인터넷신문
제2024-219호	조이뉴스24 (joynews24)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이선균, 생전 남긴 유서엔..."이것 밖에 방법 없다"."어쩔 수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4-220호	인터넷 중앙일보	2023년 12월 29일	사회면	이선균 측 "유튜버 기습 방문, 잔혹한 상황...마음으로만 애도"	인터넷신문
제2024-221호	증권경제신문	2023년 12월 28일	엔터&라이프면	故 이선균, 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가족과 소속사에 유서 남겨	인터넷신문

■ 제2024-16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22호	인터넷 천지일보	2023년 12월 27일	연예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 故이선균 유서 일부 유출	인터넷신문
제2024-223호	텐아시아	2023년 12월 28일	연예가화제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故이선균, 유서에 무슨 말 적었나 [TEN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224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2023년 12월 28일	이슈면	"미안하다" 전해진, 남편에 받은 유서 내용?...위약금 얼마길래 [TOP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225호	투데이 플로우	2023년 12월 28일	연예면	'이선균 사망' 마담 ○○○, "도주 중 체포"..아내 전해진 신고 "유서 공개 원치않아"(녹취록, 불륜)	인터넷신문
제2024-226호	트렌드경제신문	2023년 12월 28일	트렌드 라이프면	이선균, 사망 원인이 여자 때문 아니다? 유서 화제	인터넷신문
제2024-227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29일	사회면	故이선균 오늘 영면.."막무가내 방문, 멈춰 달라"	인터넷신문
제2024-228호	하이 데일리	2023년 12월 28일	핫이슈면	"유서 내용 공개"... 故이선균 협박한 마담 ○○○, 도주 중 체포 돼 붙잡혀 언론에 최초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229호	한국아이닷컴	2023년 12월 27일	연예면	이선균 비보에 영화계 '비통'...정우성·전도연·조진웅·조정석 등 조문 행렬	인터넷신문
제2024-230호	인터넷 한스경제	2023년 12월 28일		"이것밖에 방법이"... 故 이선균 가족, 유서 비공개 요청에도 일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231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28일	사회면	이선균 “어쩔 수 없다. 이것 밖에 방법이”...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32호	언론사명	김경재(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2024년 01월 13일 시민의창면 「텔레그램 속 "현실" 2화」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류의 명칭, 투약 장면, 구입 경로, 가격 등을 상세히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 유통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마약류의 명칭, 투약 장면, 구입 경로, 가격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영상 일부를 비식별 조치했다 하더라도 조치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인지 혹은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 구입 경로로 추정되는 판매자 계정, 주요검색 키워드, 관련 은어 등은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되었다. 이는 마약 및 약물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모방 범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233호	언론사명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의협신문 2024년 01월 18일 의원·병원면 「○○병원, 대전 첫 '녹색건축인증'...새 병원서 첫 진료」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34호	Watcherdaily	1월 10일	뉴스면	척추·관절·골절 중점 치료병원 '○○병원' 1월 15일 진료개시	인터넷신문
제2024-235호	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월 11일	의약포커스면	[뉴스더보이스가 전하는 병원계 단신-1월 11일]	인터넷신문

■ 제2024-2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36호	사이언스앤디	1월 10일	병원/의료면	척추·관절·골절 중점 치료병원 ○○병원 1월 15일 진료개시	인터넷신문
제2024-23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1월 11일	경제면	○○병원, 9개 층 15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15일부터 본격 진료	인터넷신문
제2024-238호	인터넷 주간 의계신문	1월 10일	병원·의원면	‘척추, 관절, 골절 중점 치료병원’ 표방 ○○병원, 15일 진료개시	인터넷신문
제2024-239호	충청투데이	1월 24일	경제 07면	리젠정형외과 새이름 '○○병원'...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약속	지역일간지
제2024-240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1월 23일	충남면	새롭게 변한 대전 ○○병원,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인터넷신문
제2024-241호	한국의약통신	1월 11일	뉴스면	척추·관절·골절 중점 치료병원 '○○병원' 1월 15일 진료개시	인터넷신문
제2024-242호	한국경제	1월 17일	건강면	추간공확장술에서 반강성고정술까지...척추 원스톱 '토털 케어'	중앙일간지
제2024-243호	인터넷 한국경제	1월 16일	IT·과학면	추간공확장술에서 반강성고정술까지...척추 원스톱 '토털 케어'	인터넷신문
제2024-244호	바이오타임즈	2023년 12월 28일	병원, 개원가면	○○병원, 응급실 개소... 1월 2일부터 진료 개시	인터넷신문
제2024-245호	팜뉴스	1월 9일	보건·정책면	○○병원, 수원 영통구에 응급실 오픈... 24시간 상시 진료 가능해	인터넷신문
제2024-246호	동양마이오뉴스	1월 14일	이사람이런일면	○○○○한의원 ○○○ 대표원장, ‘치료에 대한 고집, 환자에 대한 진심’	인터넷신문
제2024-247호	인터넷 동양일보	1월 10일	뉴스면	○○○○한의원 ○○○ 대표원장, ‘치료에 대한 고집, 환자에 대한 진심’	인터넷신문
제2024-248호	매경닷컴	1월 18일	사회	○○○○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4-249호	메디파나뉴스	1월 12일		○○○○병원, 새롭게 신축...길동사거리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250호	인터넷 의학신문	1월 12일	병의원면	○○○○병원, 새병원 신축 이전 진료 개시	인터넷신문
제2024-251호	의협신문	1월 12일	의원·병원면	○○○○병원, 길동사거리 신축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252호	인터넷 후생신보	1월 12일	병·의원면	○○○○병원 새병원 신축...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53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1월 12일 연예면 「'외도 강경준' 퇴직 통보, '부동산 여직원'과 함께 잠적...장신영 이혼 준비? (+카톡)」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제목 및 사적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불륜 당사자들의 근황이 불분명할 뿐 동반 잠적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목에는 두 사람의 동반 잠적이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하였다. 해당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사실 관계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 위 기사는 당사자들 간의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공표된 통신내용이 대화자만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수단에 의한 대화라는 점, 당사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주요 논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이성교제에 관한 사적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제1조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5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54호	e머니에스 (e money S)	1월 13일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연락 끊고 무단 결근"	인터넷신문
제2024-255호	미디어파인	1월 13일	KPOPSTAR면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업체에 연락 끊고 무단 결근"	인터넷신문
제2024-256호	오토트리뷴	1월 15일	뉴스면	"가족들만 미칠 지경일 듯"... 불륜 의혹 강경준, 유부녀와 돌연 잠적 태세 돌입한 근황은?	인터넷신문
제2024-257호	스타뉴스 (star news)	1월 12일	엔터테인먼트면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 "연락 끊고 무단 결근"	인터넷신문
제2024-258호	스포탈코리아	1월 12일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行.."연락 끊고 무단 결근→퇴직 통보"[★NEWSing]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59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1월 30일 연예면 「원창연 군대 논란, "아이큐 53" 주장해 나락.. 전부인 XX, 뚜기(결혼·이혼·재혼)」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한 인터넷 방송인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안과 무관한 배우자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전반적 보도 내용이 남편의 위법 행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초상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배우자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인물은 사인(私人)에 가까우며, 남편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서의 초상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령 널리 알려진 인물의 병역 기피 혐의가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인이라 하더라도, 혐의와 무관한 배우자의 초상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260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2월 12일 연예면 「"박지윤 경호원에 정강이 차여"... 최동석, 교문 앞에서 아이 기다리다 당한 충격적인 사연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이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의 이혼 논란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이름을 공표하였다. 부부의 SNS를 통해 자녀들의 초상이 공표된적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자녀들 본인의 초상 공표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부모와 달리 자녀들은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고, 이혼 사안 자체를 넘어서 자녀의 초상과 이름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261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1월 25일 연예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로 '역고소' 당한 충격 근황.. 학교, 만행, 폭행 재조명 (+논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웹툰작가와 자녀 담당교사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발달장애로 인한 돌발행동이 다뤄지는 보도에서, 장애 아동 당사자와 그 형제가 초상 공표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유명 작가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공적 인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인(私人)에 불과하며, 사건 자체가 아닌 자녀들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262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2월 22일 연예면 「"분노의 저격".. 황정음, 이영돈과 재결합 3년 만에 이혼 발표.. 불륜 의혹 제기된 이유는?"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이름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초상과 이름을 공표하였다. 공표된 초상 중 일부는 오래 전에 촬영된 것으로 식별이 어려워 보이나, 이름과 함께 공표된 또 다른 초상은 비교적 최근의 초상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특정되고 있다. 설령 과거의 방송을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 등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에 관한 부정적 사안을 다룬 보도에서의 초상 및 성명 공표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 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해당 연예인과 별개로 자녀는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고, 보도의 논점도 자녀와 무관하므로 이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6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63호	살구뉴스	3월 9일	연예면	황정음 근황, 남편 이영돈 외도 폭로 후 2주 만에 보인 모습에 모두 경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6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2월 09일 뉴스면 「포예림 군무원, 학폭 가해자 '○○○' 여전히 00사단 근무 (+신상, 얼굴, 인스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성명 등의 신상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학교 폭력 피해를 공론화했던 인물의 사망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초상과 성명 등의 신상을 여과없이 공표하였다. 공론화 당시 유튜브 폭로 영상 등을 통해 가해 당사자들의 신상이 공표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을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또 신상 공표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의사를 추정할 여지는 없으며, 가해자 중 온라인에 반박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성명을 밝힌 당사자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성명 외 초상을 비롯한 신상정보 일체의 공표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해당 보도가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가 아닌 특정 사인(私人)의 신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과 성명 등의 신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265호	언론사명	(주)내외일보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내외일보 2024년 01월 28일 정치사회·세계면 「여친 190번 찔러 살해한 남성, 얼굴과 이름 공개...」"95년생 류찬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약혼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된 피고인의 초상 및 신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당사자의 항소로 현재 해당 인물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되거나 재판 진행 중 공개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유명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당사자 신상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현재 미결 구금 중인 이상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그 밖의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이 보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인(私人)의 초상 및 신상 정보가 사안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66호	위키�트리 (Wikitree)	1월 28일	사회면	약혼녀 190번 찔러 죽인 남자 이름+얼굴 공개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267호	투데이 플로우	1월 28일	뉴스면	'사건반장' 양원보, "예비신부 190차례 찔러 죽인 예비신랑" 신상공개(얼굴, 이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68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매체구분	인터넷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4년 02월 01일 「“지적장애 앓는 40대, 1억원 상당 갈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발생한 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에 관해 보도하면서 '장애를 앓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장애를 치료나 해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바라보는 표현으로,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 혹은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6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69호	충청신문	2월 1일	06면	"약혼녀예요"... 지적장애·치매 앓는 모자에 1억 갈취	지역일간지
제2024-270호	인터넷 베스트 일레븐	2월 15일	칼럼면	[김태석의 축구 한 잔] 클린스만·정몽규 논란의 최대 피해자, '병어리 냉가슴'인 개막 앞둔 K리그	인터넷신문
제2024-271호	텐아시아	3월 6일	연예가화제면	'이혼' 벤·황정음은 당당하게 활동하는데...서인영만 병어리 냉가슴 앓듯 [TEN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272호	경북매일	2월 5일	03면(정치)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결정장애인가, 노회한 전략인가	지역일간지
제2024-273호	인터넷 경북매일	2월 4일	오피니언면	결정장애인가, 노회한 전략인가	인터넷신문
제2024-274호	게임톡	2월 1일	리뷰&분석면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캐릭터 결정장애 해결해드려요"	인터넷신문
제2024-275호	매경닷컴	2월 6일	기업면	"결정장애 소비자 환호하겠네"...상품 입력만 하면 이런 일이	인터넷신문
제2024-276호	이투데이신문	2월 20일	20면(금융/재테크)	금리인하 기대 속 "대출은 언제..." 고민 깊어진 '결정장애' 예비차주	지역일간지
제2024-277호	이투데이	2월 20일	금융·증권면	[금융인사이트] "대출 언제 받지?"...금리 인하 기대에 '결정장애' 온 예비 차주들	인터넷신문
제2024-278호	조선닷컴	3월 4일	콘텐츠판면	결정장애를 일으킬 2024 봄 시즌 뉴 백	인터넷신문

■ 제2024-26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79호	프레스리안 (Pressian)	2월 9일		결정장애에 빠진 3천 명,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인터넷신문
제2024-280호	경기신문	2월 26일	09면(수도권)	김포시, 비영리 단체에 '눈먼 보조금' 63건 지급 포착	지역일간지
제2024-281호	인터넷 경기신문	2월 25일	뉴스면	'눈먼 돈 파헤쳤더니'... 김포시, 민간 보조금 사업 집행 부실 63건 적발	인터넷신문
제2024-282호	경남뉴스	2월 14일	정치면	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는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283호	경향신문	3월 7일	20면(경제)	탐욕에 눈먼 가상통화	중앙일간지
제2024-284호	인터넷 경향신문	3월 6일	경제면	냉·온탕 '비트코인'...과열심리·탐욕에 눈먼 가상통화	인터넷신문
제2024-285호	글로벌에픽	1월 29일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오민석, 겁 없는 구 아내와 탐욕에 눈먼 구 남편의 잘못된 만남	인터넷신문
제2024-286호	김포매일	2월 26일	사회면	'눈먼 돈 파헤쳤더니'... 김포시, 민간 보조금 사업 집행 부실 63건 적발	인터넷신문
제2024-287호	뉴스1코리아	2월 6일	경제면	[기자의눈]총선 표계산에 눈먼 여야, 임계점 넘긴 고준위특별법	뉴스통신
제2024-288호	더팩트	2월 7일	칼럼면	[이철영의 정사신] '또 위성정당' 승리에 눈먼 정치권	인터넷신문
제2024-289호	엑스포즈뉴스	2월 4일		조정석, 신세경·이신영 포옹 목격...질투에 눈 멀까(세작)[종합]	인터넷신문
제2024-290호	한국일보	2월 28일	14면(경제)	표심에 눈먼 정치권... '中企 담합' 허용할까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제2024-291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4년 02월 11일 사회면 「"정리가 쓴 팬티라이너 노리는 사람, 나 말고 더 있다" 충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여성 용품에 대한 이상 성욕을 드러낸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글에 드러난 성 관련 변태적 행위를 여과 없이 공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92호	인터넷 내외일보	2월 11일	뉴스면	"경리가 쓴 생리대 노리는 사람, 나 말고 또 있다"...충격 게시물에 댓글이 '더 경악'	인터넷신문
제2024-293호	디스패치뉴스	2월 11일		"경리가 쓴 팬티라이너 노리는 사람, 나 말고 더 있다" 충격	인터넷신문
제2024-294호	Turbonews (터보뉴스)	2월 10일		"요즘 경리 팬티라이너 노리는 새끼가 나 말고 또 생겼나 봄"(+텍협 주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295호	언론사명	중앙일보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4년 01월 13일 사회면 「현직 경찰관, 근무 중 파출소에서 총기 사망」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 및 구체적 자살 방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현직 경찰관의 자살 추정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및 구체적 자살 수단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보도가 사망자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근무지, 나이, 계급 등을 종합해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점에서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망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의 경위가 아닌 당사자의 신원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일 수는 없다. 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요지를 넘어 자살의 구체적 수단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일부 독자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2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296호	세계일보	1월 15일	09면(사회)	현직 경찰관 근무지서 총기로 극단 선택	중앙일간지
제2024-297호	인터넷 세계일보	1월 15일	사회면	현직 경찰관 근무지서 총기로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298호	이투데이	1월 13일	사회면	현직 경찰관, 파출소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끝내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4-299호	인터넷 서울신문	1월 13일	사회면	아산 파출소서 경찰관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 제2024-2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00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1월 13일	뉴스면	현직 경찰관, 근무 중 극단적 선택…총상 입은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301호	뉴스1코리아	1월 13일	전국면	현직 경찰관, 근무 중 극단적 선택…병원 이송했지만 숨져	뉴스통신
제2024-302호	뉴시스(NEWS IS)	1월 13일	지방면	현직 경찰관 근무지서 숨진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4-303호	동아닷컴	1월 13일	사회면	현직 경찰관, 근무 중 극단적 선택…병원 이송했지만 숨져	인터넷신문
제2024-304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1월 13일	지역면	아산 신창파출소 간부, 숙직실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신문
제2024-305호	아산톱뉴스 닷컴	1월 13일	뉴스면	우울증 앓던 50대 경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신문
제2024-306호	아산 투데이닷컴	1월 13일	사회·단체면	아산 파출소서 경찰 간부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307호	아이뉴스24 (inews24)	1월 13일	전국면	경찰 간부, 파출소 숙직실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308호	법률방송뉴스	1월 14일	법조·사회면	현직 경찰관, 근무 중 극단적 선택… 병원 이송 중 숨져	인터넷신문
제2024-309호	대전일보	1월 15일	03면(종합)	아산 경찰관 파출소 숙직실서 극단 선택	지역일간지
제2024-310호	대전일보닷컴	1월 13일	뉴스면	아산 경찰관 파출소 숙직실에서 권총으로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11호	언론사명	이데일리(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24년 02월 08일 사회일반면 「설 하루 앞두고…대낮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무슨 일?」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장소 및 방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자살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 장소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요지가 아닌 구체적인 자살 장소 및 방법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의 공표는 불특정 일부 독자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12호	노컷뉴스	2월 8일	사회면	설 하루 앞두고...대낮 서울 도심 공원서 남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313호	뉴시스 (NEWSIS)	2월 8일	사회면	설 코앞에...안양천 산책로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4-314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8일	사회면	설 코앞에...안양천 산책로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1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2월 08일 연예면 「DJ 예송 실물 공개, 구속 당하자 엄마한테 보낸 편지 내용에 모두 분노 (+부모, 판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고 당시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표하였다. 사진 일부가 비식별 조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건 현장의 혈흔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공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316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인천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천신문 2024년 01월 31일 인천면 「인천 척추관절 ○○병원, 새 이름 '○○○병원'으로 재탄생」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17호	인터넷 주간 의계신문	1월 31일	병원·의원면	인천 척추관절 바로병원, '○○○병원'으로 재탄생	인터넷신문
제2024-318호	인터넷 당진신문	1월 20일	기획/연재면	“환자와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건 시골의사의 특권”	인터넷신문
제2024-319호	국민뉴스	1월 24일	건강면	○○병원, 의학박사 ○○○ 교수 초빙 소아정형외과 3인 체계 구축...	인터넷신문
제2024-320호	메디컬라이프	1월 27일	의료면	○○병원 의학박사 ○○○ 교수 초빙 소아정형외과 3인 체계 구축한 대칸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4-321호	사이언스앰디	1월 23일	병원/의료면	○○병원, 소아정형외과 3인 체계 구축... 의학박사 ○○○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322호	세종과라미	1월 23일	정치·사회면	○○병원, 소아정형외과 3인 체계 구축 ..	인터넷신문
제2024-323호	인터넷 주간 의계신문	1월 23일	병원·의원면	○○병원, 소아정형외과 3인 체계 구축...○○○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324호	키닥터	1월 23일	뉴스면	○○병원, 소아정형외과 3인 체계 구축... 의학박사 ○○○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325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1월 27일		○○병원 의학박사 ○○○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326호	주간인물 위클리피플	1월 11일	MEDICAL면	○○○ ○○○여성의원 원장, 세계 최고 수준의 임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다	인터넷신문
제2024-327호	HR월드 크리에이터뉴스	1월 18일	지역면	의정부 ○○○○○병원 24년 2월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328호	SF뉴스	1월 18일		의정부 ○○○○○병원 24년 2월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329호	대구북구뉴스	1월 18일	지역공동체면	의정부 ○○○○○병원 24년 2월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330호	투데이 타임즈	1월 18일		의정부 ○○○○○병원 24년 2월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331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1월 18일	정치면	의정부 ○○○○○병원 24년 2월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332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월 7일	전국면	○○○○병원, 부산 기장재향경우회와 MOU 체결... “경찰 가족 건강증진 이바지”	인터넷신문
제2024-333호	서울파이낸스	2월 6일	정책/경제일반 면	○○○○병원, 부산 기장재향경우회와 MOU...“경찰 가족 건강증진 이바지”	인터넷신문
제2024-334호	아시아뉴스 통신	2월 7일	사회/사건/사고 면	○○○○병원, 부산 기장재향경우회와 MOU 체결... “경찰 가족 건강증진 이바지”	뉴스통신
제2024-335호	인터넷 파이낸스투데이	2월 6일	City&Global면	○○○○병원, 부산 기장재향경우회와 건강증진을 위한 MOU 체결	인터넷신문
제2024-336호	HR월드 크리에이터뉴스	2월 6일	지역면	2024년 3월 개원 청주 ○병원	인터넷신문

■ 제2024-3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37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2월 6일	정치면	2024년 3월 개원 청주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4-338호	얼리어답터 뉴스	2월 5일	라이프 스타일면	○○○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하려면	인터넷신문
제2024-339호	클릭뉴스	2월 5일		○○○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하려면	인터넷신문
제2024-340호	한국IT 산업뉴스	2월 5일	지역면	○○○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하려면	인터넷신문
제2024-341호	주간인물 위클리피플	1월 11일	MEDICAL면	○○○ ○○병원 대표원장, 관절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하며 미래 의술로 젊음을 되찾아준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42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인천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아이뉴스24(inews24) 2024년 02월 01일 「"중요한 부위도 꽃같이 예쁘겠지"...61년생 남성이 작성한 선 넘는 댓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제목 및 본문에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성 유튜버 채널에 게시된 성희롱 댓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선정적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특히 해당 문구를 제목에 사용하여 성희롱 문구가 부각되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43호	인터넷 내외일보	2월 1일	뉴스면	"중요부위도 예쁘겠지" 女유튜버 성희롱한 60대男..."연락줘요"	인터넷신문
제2024-344호	뉴스1코리아	2월 1일	사회면	"거기도 꽃같이 예쁘겠지"...61년생男, 84만 여성 유튜버에 단 댓글	뉴스통신
제2024-345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2일	사회면	"그 부위도 꽃같이 예쁘겠지" 61년생男, 95년생 女유튜버에 '밥 한끼' 제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46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4년 02월 02일 엔터면 「'르세라핌' 멤버들 향해 “아래에 꽃고 싶다”고 말한 남자 가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제목 및 본문에 사용한 선정적인 성희롱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걸그룹이 방송 출연 중 성희롱을 당한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선정적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특히 해당 문구를 제목에 사용하여 성희롱 문구가 부각되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4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47호	오토트리뷴	1월 30일	뉴스면	"나도 꽃고 싶어"... 방송 도중 르세라핌에게 성희롱 발언한 유명 연예인 정체에 '분노'	인터넷신문
제2024-348호	원픽뉴스	1월 29일	연예면	"아래에 꽃고 싶다"... 르세라핌에 성희롱 한 '유명 남배우' 계속 되는 비난에 결국 그가 한 해명은?	인터넷신문
제2024-349호	조선닷컴	1월 30일	연예면	대만배우 황위진, 르세라핌에 “나도 꽃고 싶다” 성희롱 논란 사과	인터넷신문
제2024-350호	티비리포트	1월 30일	이슈면	“나도 꽃고 싶다”...르세라핌 ‘성희롱 논란’ 男스타 지지한 동료들 (+이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51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4년 03월 28일 「“장신영 두고 다른 여자와..” 배우 강경준 불륜 의혹 이후 최근 근황 공개됐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해당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 여부를 다루는 주요 논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기사가 세간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을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은 존재하는 바, 혼외 이성 간 애정 표현 등의 사적인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5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52호	살구뉴스	3월 1일	연예면	상간남 소송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 중 전해진 소름돋는 소식..."장신영은 어찌나" (+근황)	인터넷신문
제2024-353호	하이 데일리	3월 7일	엔터면	"스키장에서 여자 번호 엄청 따"... 상간남 강경준, 불륜녀와 잠적 중 전해진 소식에 모두 충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54호	언론사명	김성용(뉴스속닥)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속닥 2024년 03월 02일 엔터면 「"성인 용품을.." 현봉식 여자친구 인스타, '바람+반려견 유기' 허위사실 유포 연인 고소」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 (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 및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배우의 사생활이 폭로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의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해당 배우가 폭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폭로자를 고소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가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통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 대화와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에게 보여지는 인상이 중요한 당사자의 직업을 고려할 때, 문란한 사생활을 암시하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설령 이 기사가 세간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을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은 존재하는 바, 이성 관계에서의 사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통신 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 또는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35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2월 28일 연예면 「이범수 아내 이윤진 근황.. 딸만 있고 아들·남편은 없어 이혼 논란에 모두 충격 (+재혼)」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배우의 이혼 경위를 보도하면서, 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설령 과거 언론보도 및 개인 SNS를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해당 이혼 과정을 다룬 보도에서 초상 공표에 동의 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유명인인 배우와 달리 전 배우자와 자녀들은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고, 보도의 논점도 전 배우자 혹은 자녀들과 무관하므로 이들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56호	스포티비뉴스	3월 23일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아들과도 생이별 "소식 아시는 분 DM 부탁"[이슈S]	인터넷신문
제2024-357호	원픽뉴스	3월 17일	연예면	"첫 번째는 5개월 만에 이혼"... 이범수, 이윤진과 안타까운 두 번째 이혼 소식에 모두 오열했다	인터넷신문
제2024-358호	인디뉴스	3월 17일	연예면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윤진, 이범수와의 결별 공식 인정	인터넷신문
제2024-359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3월 17일		이범수, 두 번째 이혼...이윤진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인터넷신문
제2024-360호	투데이 플로우	3월 16일	연예면	이범수♥이윤진, 결혼 14년만에 파경.."이혼 조정 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61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2월 27일 연예면 「"소름돋는 상간녀 정체"... 나균안 아내, 남편의 충격적인 불륜 상대 폭로에 나균안 현재 근황 재조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불륜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배우자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배우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성명을 밝힌 채 남편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였으므로 성명 공표에는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가 추정되나, 방송 중 자신의 초상을 공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사안의 부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상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유명인의 불륜 의혹이 세간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유명 선수와 달리 배우자는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없는 일반 사인(私人)이며, 의혹 자체와 무관한 배우자의 초상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6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62호	뉴스속닥	3월 2일	스포츠·문화면	나균안 와이프 인스타 주소, '불륜·바람녀 얼굴'까지 공개돼 심각한 상황.. "나 아니네"	인터넷신문
제2024-363호	인디뉴스	2월 28일	연예면	"아내가 직접 폭로해.."프로야구 선수 나균안의 불륜 폭로에 모두 경악	인터넷신문
제2024-364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2월 29일		"권은비까지.." 나균안 와이프의 불륜 폭로 아무도 예상 못한 국면 맞이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65호	언론사명	(주)매경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매경닷컴 2024년 03월 04일 IT·과학면 「[KDX 핫데이터] 다가오는 봄철 축제·여행 계획...선택장애 도와줄 인사이트 리포트」 제하의 기사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 사항	대상 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다양한 지역 축제를 소개하는 자료를 홍보하면서, 여행 관련 선택의 어려움을 '선택장애'에 빗대 표현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66호	인터넷 이코노미조선 (Economy Chosun)	4월 1일	ISSUE& PEOPLE면	갈등과 후회의 연속 '선택 장애'	인터넷신문
제2024-367호	폴리뉴스 (polinews)	2월 21일	오피니언· 이슈면	[김능구·장성철의 직언직설 2월②] 국힘 '운동권 청산론', 외눈박이 이념정치...혁신·통합 못한 민주당 빌미 제공	인터넷신문
제2024-368호	경기매일	2월 26일	13면(수도권)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지역일간지
제2024-369호	인터넷 경기매일	2월 25일	인천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4-370호	경기북부 포커스	2월 25일	뉴스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4-371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3월 15일	정치면	이재한 시의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눈먼돈'	인터넷신문
제2024-372호	매일경제	3월 25일	25면(사회)	승소에만 눈먼 '법 기술자들' 공직선거 출마 도마위	중앙일간지
제2024-373호	매경닷컴	3월 24일	사회면	승소에만 눈먼 '법 기술자들' 공직선거 출마 도마위	인터넷신문
제2024-374호	인터넷 매일일보	2월 24일	전국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4-375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월 24일	전국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인터넷신문

■ 제2024-3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76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7일	사회면	대지급금은 ‘눈먼 돈’…부정 수급받아 땅 사고 건물 짓고	인터넷신문
제2024-377호	성남미디어	2월 24일	사회/교육/ 청소년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4-378호	세계일보	3월 21일	08면(기획)	실적 눈먼 금융사·당국의 감독실패로 반복되는 ‘투자 人災’	중앙일간지
제2024-379호	인터넷 세계일보	3월 21일	비즈면	실적 눈먼 금융사·당국의 감독 실패로 반복되는 ‘투자 人災’ [심층기획]	인터넷신문
제2024-380호	수도권일보	2월 26일	05면(수도권)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	지역일간지
제2024-381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2월 25일	지역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 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4-382호	스카이 데일리닷컴 (skyedaily)	2월 25일		강화군 지방보조금 ‘눈먼 돈’ 없애는 교육 앞장	인터넷신문
제2024-383호	스포넷뉴스 (SPONETNEWS)	2월 24일	사회/교육면	강화군, 눈먼 돈 없앤다…지방보조금 사용자 교육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4-384호	인터넷 이데일리	2월 19일	사회일반면	5000만원에 눈멀어 성폭행 가해자편 든 남자 친구	인터넷신문
제2024-385호	이투데이신문	3월 13일	05면(기획)	고수익 유혹 광고·홍보…눈먼 돈 노리는 유튜브 방치	지역일간지
제2024-386호	헤드라인제주	2월 27일		"K팝 콘서트에 눈 먼 서귀포시, 안전예산은 스스로 뭉개"	인터넷신문
제2024-387호	헤럴드경제	3월 18일	08면(정치)	이삭 줍고 의원 뺨주고, 국민혈세 25억 ‘눈먼 돈’	중앙일간지
제2024-388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18일	뉴스면	이삭 줍고, 의원 뺨주고…국민 혈세 25억 ‘눈먼 돈’[이런정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389호	언론사명	(주)내외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내외일보 2024년 03월 08일 뉴스면 「'극단선택' 김포 공무원, 신상 공개해 민원 부추긴 A씨는 교사...'신상정보 확산」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발생한 김포시청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보도가 사망자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직급, 나이대, 소속 부서, 구체적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이 보도가 민원 담당 공무원 환경에 대한 공익적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의 경위가 아닌 당사자의 신원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망자 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38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390호	데일리안	3월 8일	사회면	극단선택 김포시 공무원, 새벽 2시까지 악성민원 시달렸다	인터넷신문
제2024-391호	동아닷컴	3월 8일	사회면	[단독]"숨진 공무원, 새벽 2시까지 민원 시달려"	인터넷신문
제2024-392호	디스패치뉴스	3월 7일	핫이슈면	"숨진 김포 공무원에 '먹살 잡고 싶네' 댓글 누리꾼은 교사?" 신상 확산	인터넷신문
제2024-393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3월 6일	전국면	김포시 공무원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 경찰 조사에 나서	인터넷신문
제2024-394호	아이뉴스24 (inews24)	3월 6일	사회면	숨진 공무원 '신상공개' 한 이유 "차 밀렸다"...온라인 카페에 '비판 쇄도'	인터넷신문
제2024-395호	위키�트리 (Wikitree)	3월 8일	사회면	"우리 아들 어떻게" 김포시 공무원 영정 앞 어머니의 절규	인터넷신문
제2024-396호	인천일보	3월 7일	07면(사회)	'좌표 찍기' 표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24-397호	중부데일리	3월 6일	사회면	"ㅋㅋㅋ" 인터넷 카페 좌표 찍기에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398호	인터넷 중앙일보	3월 7일	사회면	‘포트홀’ 민원 ‘보수로 길막혀’ 또 민원...공무원 PC엔 “힘들다”	인터넷신문
제2024-399호	중앙일보	3월 7일	10면(사회)	‘포트홀’ 민원 ‘보수로 길막혀’ 또 민원...공무원 PC엔 “힘들다”	중앙일간지
제2024-400호	인터넷 한국일보	3월 8일	사회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동료들 마지막 배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01호	언론사명	(주)서울경제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24년 03월 08일 사회면 「임용 3년 미만 새내기 순경...휴게소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현직 경찰관의 자살 추정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보도가 사망자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급, 나이, 임용 시기, 특수한 근무지, 담당 업무 등을 종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감시의 대상인 선출직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사건 자체의 경위를 넘어선 사망자의 신원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망자 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02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3월 8일		총·실탄 췌겨 나간 순경...고속도로 휴게소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403호	sportschosun.com	3월 8일	라이프면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404호	인터넷 강원일보	3월 8일	사회면	총기·실탄 췌기고 실종된 해경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405호	뉴스1코리아	3월 8일	전국면	총기·실탄 췌겨 고속도서 숨진 새내기 순경...해경, 반출과정 조사(종합)	뉴스통신
제2024-406호	데일리안	3월 9일	사회면	근무지서 총기·실탄 반출한 30대 해경, 차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407호	부산닷컴	3월 8일		30대 해경 숨진 채 발견... 근무지서 총기 꺼내가	인터넷신문
제2024-408호	싱글리스트	3월 8일	정치사회면	근무지서 총기 반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409호	연합뉴스	3월 8일	최신기사면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24-410호	이투데이	3월 8일	사회면	30대 새내기 해경, 휴게소서 숨진 채 발견...차에는 권총과 실탄이	인터넷신문
제2024-411호	조선닷컴	3월 8일	사회면	입직 3년 안 된 해경 순경...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 제2024-4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12호	인터넷 해사신문	3월 8일	Safety면	총기·실탄 췌경 고속도서 숨진 새내기 순경...해경, 반출과정 감찰(종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13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3월 11일 스포츠면 「"2023년 너무 힘들었다"... 30대 배구선수 모텔서 숨진채 발견, ○○○ 최근 인스타그램 글 재조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초상, 성명 등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전직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 추정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여 그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였다.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망 사건임을 감안할 때, 초상 및 성명 공표에 대한 유족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사망자가 전직 프로선수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므로, 해당 사망 사건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망자 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14호	살구뉴스	3월 11일	뉴스면	30대 여자 사망한 프로배구 선수 누구길래...○○○, 근황 재조명(+인스타)	인터넷신문
제2024-415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3월 11일	실시간이슈면	‘전주 모텔 사망 여자 배구선수’ ○○○ 사망 전 공개됐던 안타까운 상황 (+인스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16호	언론사명	(주)제이케이뉴스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medisobizanews(메디소비자뉴스) 2024년 03월 07일 뉴스면 「서울암요양병원, 3월 운정 ○○○○요양병원으로 리뉴얼 개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 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17호	뉴스경남	1월 26일	16면	마산 ○○○병원 개원 14년째...지역 봉사에 충실	지역일간지
제2024-418호	인터넷 뉴스경남	1월 25일	기획/특집면	○○○병원 개원 14년째 ... 지역 봉사에 충실	인터넷신문
제2024-419호	메디컬리포트	2월 26일	오피니언면	[○○○○치과 확장 개원 1주년 특집] ○○○ 대표 원장의 치열한 일만 시간 속으로	인터넷신문
제2024-420호	서울매일신문	2월 26일	사회면	○○○○치과 확장 개원 1주년 특집	인터넷신문
제2024-421호	인터넷 서울일보	2월 26일	인터뷰면	[○○○○치과 확장 개원 1주년 특집] ○○○ 대표 원장의 치열한 일만 시간 속으로	인터넷신문
제2024-422호	IT조선	2월 27일	과학·헬스	○○○○내과 부천서 개원...서울대 교수 출신 의료진 구성돼	인터넷신문
제2024-423호	데일리안	2월 20일	사회면	○○○○내과, 부천서 개원...서울대 교수 출신 의료진	인터넷신문
제2024-424호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2월 27일	산업면	○○○○내과 부천서 개원...서울대 교수 출신 의료진 모였다	인터넷신문
제2024-425호	인터넷 한국경제	2월 27일	사회면	○○○○내과 부천서 개원...서울대 교수 출신 의료진	인터넷신문
제2024-426호	라이프인	2월 29일	현장면	암 재발 방지와 예방중심 사회의 첫걸음, ○○○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427호	소셜임팩트뉴스	2월 29일	비즈니스면	괴산자연드림파크에 ○○○ 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428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2월 29일	산업면	식·생활 개선 통한 암 재발 예방 '○○○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 제2024-4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29호	인터넷 중도일보	3월 2일	전국면	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 괴산자연드림파크에 ○○○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430호	충청투데이	3월 4일	16면(지역)	괴산 ○○○요양병원 문 활짝	지역일간지
제2024-431호	한국공보뉴스	2월 29일		괴산 자연드림파크, ○○○요양병원개원	뉴스통신
제2024-432호	인터넷 한겨레	2월 29일	경제면	○○○생협, ‘항암 이후’ 위한 요양병원 연다	인터넷신문
제2024-433호	헬스조선	2월 29일		‘휴양과 의료’ 결합된 ○○○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434호	환경데일리	2월 29일	라이프면	국내 최초 ○○○요양병원 열다	인터넷신문
제2024-435호	인터넷 인천일보	2월 26일	지역뉴스면	○○○○병원 사회적 책임으로 가까이	인터넷신문
제2024-436호	스타데일리 뉴스	2월 28일	문화·생활	○○○○피부과의원, ○○의원 안양범계점으로 병원명 변경 및 리뉴얼 이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37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4년 03월 07일 사회면 「"생식기 후벼파고 똥가 넣어"...성적 학대 당한 김포 강아지에 공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의 제목 중 독자에게 지나친 충격,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학대 피해 동물을 구조하는 유튜브 채널의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학대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해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충격·혐오감 등의 정서적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3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38호	인터넷 내외일보	3월 8일	정치사회·세계면	"생식기 후벼파고 똥가 넣어"...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에 '분노' 폭발	인터넷신문
제2024-439호	디스패치뉴스	3월 7일	핫이슈면	"생식기 후벼파고 똥가 넣어"...성적 학대 당한 김포 강아지에 공분	인터넷신문
제2024-440호	원픽뉴스	3월 7일	사회면	"생식기 후벼 파고 쑈서넣어".. 여자 강아지가 당한 도넘는 동물 학대 수준에 모두 경악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41호	언론사명	배시우(커넥트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커넥트뉴스(Connect News) 2024년 03월 07일 방송/연예면 「'상간남 의혹'강경준 구 근황? "정신과 치료중"」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의 제목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불륜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의 근황을 보도 하면서, 사실 관계를 오해하게 하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제목에는 자녀의 정신과 치료가 단정적 사실인 양 보도되었으나, 본문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이러한 제목은 독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42호	국제뉴스	1월 29일	연예면	'상간남 의혹' 강경준 침묵 길어지자 구 불륜 "정신과 치료 중"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4-443호	언론사명	탁형진(하이 데일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하이 데일리 2024년 03월 05일 핫이슈면 「"이번에 이강인 뽑으면 안 된다"... 손웅정, 3월 A매치 앞두고 충격 '발언'」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의 제목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출전 선수 명단에 대한 축구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제목을 사용하였다. 제목에는 특정 인물이 출전 선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 처럼 보도되었으나, 본문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발언한 바 없다. 이러한 제목은 독자에게 사실 관계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44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4년 03월 26일 문화·연예면 「[SC이슈] 이윤진 "子소식 알려 달라"vs이범수 "사실 다른 부분多" 쇼윈도 부부 진흙탕 이혼 공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배우의 이혼 경위를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설령 해당 부부의 개인 SNS를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 및 성명을 재 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부모의 이혼 관련 보도에서 초상 및 성명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유명인인 배우와 달리 자녀들은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고, 보도의 논점도 자녀들과 무관하므로 이들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4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45호	sportschosun.com	3월 26일	연예면	[SC이슈] 이윤진 "子소식 알려 달라"vs이범수 "사실 다른 부분多" 쇼윈도 부부 진흙탕 이혼 공방	인터넷신문
제2024-446호	K trendy NEWS	3월 16일	뉴스면	'결혼 14년만 파경'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 절차 중 발리에서 근황 전해..."아들 소식 궁금해"	인터넷신문
제2024-447호	오토트리뷴	3월 17일	뉴스면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배우 이범수, 결혼 14년 만에 전한 이혼 조정 소식에 SNS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24-448호	국제뉴스	3월 27일	연예면	장신영·강경준→이윤진·이범수 이혼, 연예계 떠들썩하게 만든 공방전 2건	뉴스통신
제2024-449호	커넥트뉴스 (Connect News)	3월 21일	방송/연예면	이범수 재혼마저 실패...첫 결혼과 이혼사유 재조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50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4월 01일 연예면 「"최근 연애 경험 있어".. 은지원 '재혼' 언급에 전부인과의 이혼 사유 재조명됐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재혼 관련 언급을 보도하면서 전 배우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설령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 및 성명을 재 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초상 및 성명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유명 연예인과 달리 전 배우자는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고, 보도의 논점도 전 배우자와 무관하므로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50호	언론사명	(주)데일리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데일리안 2024년 04월 19일 사회면 「"광주 실종 여중생에 빌라 제공男...정당 사유 없다면 실종아동법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391]」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 및 신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광주에서 실종되었던 중학생의 발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생의 초상과 신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실종 당시 수사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학생의 초상과 신상을 공표한 바 있더라도, 보도 시점은 발견 이후이므로, 신상 공표로 달성 가능한 수색 및 체포수집 등의 공익은 이미 소멸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발견 후에도 지속적으로 초상 및 신상이 공표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해당 학생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사인(私人)으로, 당사자의 초상 및 신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신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52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18일	시사면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도서 발견... 동행 남성 조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53호	언론사명	탁형진(하이 데일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하이 데일리 2024년 03월 27일 사회면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자체네"... 이재용 삼성 회장 딸, 이원주의 남자친구 정체와 충격적인 '집안' 수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신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대기업 총수 자녀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이성교제 상대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 신상 및 사생활을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들이 SNS에 공개한 사진을 재 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언론 보도의 공표까지 용인 했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당사자들의 SNS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위 역시 불명확하여, 게시에 대한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령 부모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교제 상대방의 경우 명백히 사인(私人)이므로, 상대방의 신상 및 가족관계 등은 더욱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신상 및 사생활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5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4월 17일 뉴스면 「한국 중국화 되나? 쿠팡 프레스백 수거 쓰레기 넘쳐.. "똥이나 고양이 사체도" 모두 충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온라인 구매 물품 배송을 위한 다회용 가방이 물지각 하게 이용되는 행태를 보도하면서, '중국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국가는 기사의 논점과 무관하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55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기호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기호일보 2024년 03월 15일 오피니언면 「선택 장애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진로 선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묘사하면서, '선택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55호와 법의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56호	(주)뉴스투데이	4월 16일	비즈면	'재산에 눈먼' 조희경의 민낯...두번 연속 기각에도 전례 드문 한정후견 재항고	인터넷신문
제2024-457호	CWN	4월 4일	정치·사회면	[단독] '돈에 눈먼' 서울교통공사...전대조항 어겨도 월세 챙기기 급급 "수수방관"②	인터넷신문
제2024-458호	sportschosun.com	3월 11일	연예면	[종합]"오해 받을 것 안했다". '이소연♥' 장세현, 질투에 눈 멀어 오창석에게 행패(피도 눈물도 없이)	인터넷신문
제2024-459호	인터넷 경기신문	3월 26일	뉴스면	경기 전교조, "표심에 눈먼 과학고 설립 공약" 반대	인터넷신문
제2024-460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18일	시사면	눈먼 돈 3억 챙기고도 구속 안된 군청 공무원	인터넷신문
제2024-461호	국제뉴스	5월 2일	전국면	"오영훈, 대기업 자본에 눈 멀어 도민 생명수인 지하수 내어주나"	뉴스통신
제2024-462호	뉴스웰	4월 19일	issue웰면	'레모나 말고 없는' 경남제약, 'M&A 차익 눈먼' 김병진 회장 [이슈&웰스]	인터넷신문
제2024-463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4월 7일	사회면	나랏돈은 눈먼돈? 허위근로자 모집·협력업체와 공모해 대지급금 '꿀꺽'	인터넷신문
제2024-464호	일간제주	5월 2일	정치면	"오영훈, 대기업 자본에 눈 멀어 도민 생명수인 지하수 내어주나"	인터넷신문
제2024-465호	전남일보	4월 19일	07면(지역)	전북양식 지원금은 눈먼 돈? ... 피해금 회수도 안돼	지역일간지

■ 제2024-45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66호	인터넷 전남일보	4월 18일	해남군면	전복양식 지원금은 눈먼 돈? ... 피해금 회수도 안돼	인터넷신문
제2024-467호	전자신문	4월 25일	05면	정치법안 눈먼 與野, 민생법안엔 눈감나	중앙일간지
제2024-468호	조선닷컴	4월 20일	문화·라이프면	비난과 조롱에 눈먼 시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인터넷신문
제2024-469호	조선일보	4월 20일	18면 (문화/출판)	비난과 조롱에 눈먼 시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중앙일간지
제2024-470호	텐아시아	3월 29일	연예가화제면	♥류준열 외모가 어떻길래...한소희, 환승 결백 주장에 눈 멀어 '자충수' [TEN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471호	인터넷 한국경제	4월 15일		2억 한강 괴물, 10억 새우타워...예술도시 눈멀어 흉물 짓는 지자체	인터넷신문
제2024-472호	한국일보	5월 3일	27면 (사설/칼럼)	눈먼 '쌈짓돈' 예비비... 내역 공개하고 적시 검증 받아야	중앙일간지
제2024-473호	인터넷 한국일보	5월 3일	오피니언면	눈먼 '쌈짓돈' 예비비... 내역 공개하고 적시 검증 받아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7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4월 01일 뉴스면 「"도대체 왜?"...동작구 부 구청장 ○○○ 사망, 소름돋는 사망 원인(+실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자살 추정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망자의 초상 및 신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설령 당사자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공적 이슈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의 경위가 아닌 당사자의 신원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망자 신상 공표는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제 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7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3월 27일 연예면 「전혀진 근황, 남편 이선균 사망 3달 만에 시아버지 별세해 모두 오열 (+아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사망자 유족의 초상 및 성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배우자의 자살 사망 이후 연이어 시부상을 당한 유명 배우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자녀들이 과거 부모와 방송에 동반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녀들을 공적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보도라 하더라도, 해당 배우와 달리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자녀들의 초상과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제 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476호	언론사명	(주)뉴스시스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4년 04월 03일 사회면 「두 눈을 의심...목숨 건 비단뱀 줄넘기(영상)」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해외에서 논란이 된 동물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살아있는 동물을 줄넘기 도구로 사용하는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77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4월 7일	뉴스면	[더영상] 뱀으로 줄넘기한 아르헨 남성들...비 맞는 어른에 우산 씌워준 아이	인터넷신문
제2024-478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3일	시사면	뱀으로 줄넘기한 아르헨 남성들... “동물학대” 비판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479호	노트넷	4월 5일	종합면	'하하' 웃으며 보아뱀으로 줄넘기한 남성들에 누리꾼 분노	인터넷신문

■ 제2024-4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80호	뉴스핌	4월 4일	애니멀 라이트면	'경충경충' 살아있는 뱀으로 줄넘기...동물학대 공분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481호	매경닷컴	4월 3일	국제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뱀으로 줄넘기 '충격영상' 동물학대男의 정체	인터넷신문
제2024-482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4월 4일	국제면	살아있는 뱀으로 줄넘기를?...아르헨 남성들 영상에 '경악'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483호	아이뉴스24 (inews24)	4월 3일	글로벌면	"동물 학대다"...살아있는 보아뱀으로 줄넘기한 남자들 [썸츠]	인터넷신문
제2024-484호	인사이트	4월 4일		살아있는 보아뱀 땅에 내려치며 줄넘기 하는 남성들...'동물학대' 논란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485호	조선닷컴	4월 3일	국제면	살아있는 뱀으로 경충경충 줄넘기... '500만뷰' 논란의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486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4일	국제면	살아있는 뱀으로 줄넘기를?...아르헨 남성들 영상에 '경악'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4-487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3일	국제일반면	[영상] "비단뱀 살려"...뱀으로 줄넘기한 남성들, 동물학대 논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488호	언론사명	(주)글로벌경제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글로벌경제신문(GETNEWS) 2024년 03월 21일 전국면 「○○한의원, 의정부 제일시장서 '오픈'...○○○ 원장 "환자분 마음 돌보는 따뜻한 한의원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48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89호	인천뉴스	3월 21일	사회면	○○○ 명의, 의정부 '○○한의원' 공식 오픈...척추·근육·관절 초음파 약침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4-490호	데이터넷	4월 3일	뉴스면	척추·관절 전문 '○병원', 개원 1주년 맞아 지역민과 소통 확대 나서	인터넷신문

■ 제2024-48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491호	medisobiznews (메디소비즈니스뉴스)	4월 10일	뉴스면	○○○○병원, 개원 21주년...“관절전문 이어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인터넷신문
제2024-492호	매경헬스	4월 8일	뉴스면	관절전문 ○○○○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인터넷신문
제2024-493호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4월 8일	병원·개원가면	개원 21년 맞은 ○○○○병원,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도약	인터넷신문
제2024-494호	인터넷 이데일리	4월 8일	의료·건강면	○○○○병원 개원 21주년,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인터넷신문
제2024-495호	베이비타임즈	4월 10일	산업면	○○○○병원, 개원 21주년...“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	인터넷신문
제2024-496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4월 11일	보건·의약면	○○○○병원 “첨단재생의료기관 거듭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4-497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3월 26일	지역면	[청주○병원] 신경외과 ○○○ 대표원장	인터넷신문
제2024-498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3월 26일	정치면	[청주○병원] 신경외과 ○○○ 대표원장	인터넷신문
제2024-499호	데일리메디	4월 5일	의원/병원면	서울 강북 노인의료 메카→“재활병원 도약” 선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00호	언론사명	김이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4월 23일 연예면 「"갑자기 속옷만 입은채"... 숙소에서 성관계 폭로 당한 걸그룹 멤버 이번엔 더 충격적인 사진 올렸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걸그룹 출신 연예인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성생활에 관한 동료 연예인의 폭로를 공표하였다. 해당 폭로가 그룹 멤버들 간의 불화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할 때, 성관계 관련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당사자가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자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생활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501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우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e시사우리신문 2024년 05월 21일 사회면 「이송필, "군납 대명사업의 실체 꼭 파헤쳐야...17년 간의 외로운 투쟁"」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자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군납사업 관련 제보를 보도하면서, 군납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자들의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보도 내 판결원본 등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그 추정적 동의 의사가 공론화를 위한 성명 공표를 넘어 상세 주소 및 등록 기준지의 공표까지 미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공론화로 불리한 지위에 처할 관련자들이 해당 보도에서의 실명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이 보도가 군납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의 경위가 아닌 일반 사인(私人)의 거주지나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적 사항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02호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5월 21일	사회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식품 군납 '대명사업'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취지 벗어난 수익사업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4-503호	NF통신	5월 21일	사회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식품 군납 '대명사업'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취지 벗어난 수익사업 논란"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4-504호	언론사명	(주)엑스포즈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엑스포즈뉴스 2024년 05월 12일 연예면 「SNS 폭로+일상ing...」이범수와 이혼소송' 이윤진, 딸 응원 메시지 공개 [엑's 이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배우의 이혼 경위를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설령 해당 자녀가 SNS를 통해 스스로 공표한 초상 및 성명을 재 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부모의 이혼 관련 언론 보도에서의 공표 까지 용인 했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유명인인 배우와 달리 자녀는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녀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0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05호	인터넷 내외일보	5월 14일	뉴스면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딸이 보낸 문자 공개..."영화 속 가족 같아 웃겨"	인터넷신문
제2024-506호	뉴스1코리아	5월 12일	연예면	"가족 4명 아니라..."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딸과 나눈 문자 공개	뉴스통신
제2024-507호	동아닷컴	5월 12일	연예면	"가족 4명 아니라..."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딸과 나눈 문자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508호	오에스이엔 (OSEN)	5월 12일	Entertainment 면	"우리 가족 웃기고 좋아"..이윤진, 진흙탕 이혼에도 딸 문자에 웃는다 [Oh! 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509호	스포탈코리아	5월 12일		"우리 가족 웃기고 좋아"..이윤진, 진흙탕 이혼에도 딸 문자에 웃는다 [Oh! 쎬 이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10호	언론사명	김성용(뉴스속닥)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속닥 2024년 05월 09일 패스트이슈면 「수능 만점 의대생 ○○○? '여자친구 신상'까지 화제.. 남다른 학력 부심 엄청 대단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성명 등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초상 및 신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현재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고, 해당 사건은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되었거나 공소 진행 중 공개 결정 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온라인에서 당사자 신상이 일부 공개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가 현재 미결 구금 중인 이상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그 밖의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령 해당 보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인(私人)의 신상정보가 사안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11호	뉴스 포켓	5월 8일	뉴스면	'수능 만점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헤어지자 해서".. 이름, 얼굴, 인스타 등 신상 확산	인터넷신문
제2024-512호	더데이즈	5월 8일	엔터면	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누구 학교 어디 수능만점 명문대 커뮤니티 글 보니 놀랍다	인터넷신문
제2024-513호	민심뉴스	5월 9일	뉴스면	수능 만점자 연세대 의대 ○○○ 신상 카톡아이디 부모 에타 신상유출	인터넷신문
제2024-514호	살구뉴스	5월 8일	뉴스면	수능 만점자 화성 연세대 의대생 ○○○ 신상, 인스타, 인터뷰 재조명 (+여자친구, 살인)	인터넷신문
제2024-515호	일촌뉴스	5월 8일	뉴스면	'화성 수능만점 의대생' 신상 확산 "연세대 ○○○"...인스타엔 여자친구 사진 남겼다 (+부모)	인터넷신문
제2024-516호	커넥트뉴스 (Connect News)	5월 9일	뉴스면	'여친 살해' 의대생, '기수열외'였다.. "실습때 XX짓" 드러나	인터넷신문
제2024-517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5월 8일	실시간이슈면	연대 의대 입학 화성 수능만점자 ○○○ 실시간 인스타 근황 (+여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18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5월 09일 뉴스면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살인 총정리 - 유튜버 불암산적2, ○○○○ 사망, 고소 이유」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강력범죄 피해자의 초상, 유튜브 채널 등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초상 및 유튜브 채널명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보도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출연하는 채널로, 초상 및 채널명의 공표는 피해자를 특정하게 하는 결정적 표지일 것이다. 가해자는 범행 후부터 검거 순간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가해 사실을 공표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사망자 특정 및 피해사실 공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범죄 피해자 초상 및 유튜브 채널명 공표는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1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19호	문화일보	5월 9일	10면(사회)	부산지법 앞서 40대 유튜버가 흉기 살해	중앙일간지
제2024-520호	인터넷 문화일보	5월 9일	사회면	부산지법 앞서 50대 유튜버가 흉기 살해	인터넷신문
제2024-521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5월 12일		법원 앞 살해...50대 유튜버, 결국 구속됐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22호	언론사명	이데일리(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24년 05월 17일 사회일반면 「"자녀 8명 지원금 月500만원 유혹비로"...결국 명든 채 숨진 8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 (신고자등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진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를 지목하는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진술자가 매우 연소한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진술 사실 보도에 대한 유효한 동의 의사를 당사자로부터 확인 혹은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령 보도가 진술자의 구체적 신상을 공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이 진술 아동의 부모 혹은 동거인이므로, 공표된 사실만으로도 해당 피고인들이 진술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진술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2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23호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6월 10일	사회면	강릉 숨진채 발견된 8세 아동 부모 신장질환 알고도 방치했다	인터넷신문
제2024-524호	인터넷 국민일보	6월 10일		신장질환 8세 아들 방치해 사망...부모 재판에 넘겨져	인터넷신문
제2024-525호	뉴스시스 (NEWSIS)	5월 18일	사회면	"月500만원 지원금 유혹에"...학대당한 8살 아이, 명든 채 숨져	뉴스통신
제2024-526호	데일리안	5월 16일	사회면	강릉서 명든 채 숨진 8살 아이...부모에게 학대·유기 당했다	인터넷신문
제2024-527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5월 17일	정치·사회·글로벌면	왼쪽 눈에 명든 채로 숨진 아동...부모의 학대 정황 드러나	인터넷신문
제2024-528호	동아닷컴	5월 17일	사회면	"자다가 죽었어요"...눈에 명든채 숨진 8살 아이, 부모 학대·방임 드러나	인터넷신문
제2024-529호	매경닷컴	5월 18일	사회면	명든 채 숨진 8살..."자녀 8명 지원금 500만원 유혹비로 사용 "	인터넷신문
제2024-530호	부산닷컴	5월 17일		"자고 일어나니 숨져있었다"던 8세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당해	인터넷신문
제2024-531호	인터넷 세계일보	5월 18일	사회면	강릉 8세 남아 학대 사망 사건...부모는 시 지원금 500만원 유혹비로 탕진해	인터넷신문
제2024-532호	연합뉴스	5월 16일		명든 채 숨졌던 8세 아동...부모로부터 학대·유기·방임 당했다	뉴스통신

■ 제2024-52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33호	인사이트	5월 18일		자녀 8명 양육 지원금 월 500만원 유혹비로 탕진한 부모...8살 아이는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534호	인터넷 중앙일보	5월 16일	사회면	"자다가 숨을 안 쉰다" 신고...멍든 채 숨진 8세 아동, 부모 학대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535호	인터넷 한국일보	5월 16일	사회면	멍든 채 숨진 8세, 생전 부모에 학대... 9일 전 신고에도 못 막았다	인터넷신문
제2024-536호	한국일보	5월 17일	11면(사회)	강릉서 멍든 채 숨진 8세 아이... 사망 9일 전 신고, 비극 못 막았다	중앙일간지
제2024-537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17일	사회면	"자다가 죽었어요"...8살 아이 의문의 죽음, 부모 학대 정황 찾았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38호	언론사명	(주)일간금융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대한금융신문 2024년 04월 30일 오피니언면 「[보험, 오해와 진실] 보장성 굴레, 종신보험을 절름발이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저축 특성이 제한된 종신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39호	인터넷 대구일보	4월 10일	경북면	총선 투표일,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경주시 공무원	인터넷신문
제2024-540호	e글로벌 이코노믹	5월 7일	글로벌비즈면	美 소비자 79% “메뉴 고를 때 결정장애”	인터넷신문
제2024-541호	뉴스시스 (NEWSIS)	5월 3일	문화면	결정 장애 있다면...‘걱정 중독’	뉴스통신
제2024-542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11일	문화·스포츠면	결정장애 햄릿과 팔랑귀 맥베스, 이 연극, 진짜 막장인데? [커튼콜 인문학]	인터넷신문

■ 제2024-5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43호	뉴스1코리아	5월 8일	전국면	"중증 지적장애 앓으며 장애가족 부양...삶의 무게 힘들었을 것"	뉴스통신
제2024-544호	뉴시스 (NEWSIS)	5월 7일	지방면	지적 장애 앓고 있던 기초생활 수급자 일가족 3명 청주서 숨진 채 발견(종합)	뉴스통신
제2024-545호	대전일보닷컴	5월 8일	충남·충북면	'지체장애' 앓던 청주 일가족 3명,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546호	매경닷컴	5월 8일	사회면	"장애 앓으며 엄마와 우울증 누나까지 부양"... 숨진 청주 일가족 슬픈 사연	인터넷신문
제2024-547호	매일신문	4월 23일	10면(기획)	뇌병변 장애 앓고 있는 김동현 씨에게 2,670만원 성금	지역일간지
제2024-548호	인터넷 매일신문	4월 29일		[성금내역] 뇌병변 장애 앓고 있는 김동현 씨에게 2,723만원 전달	인터넷신문
제2024-549호	인사이트	5월 8일		청주서 지체장애 앓던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신변 비관 메모 발견돼	인터넷신문
제2024-550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28일	뉴스면	눈먼 보조금 손본다...보조사업 66% 구조조정	인터넷신문
제2024-551호	경북일보	5월 16일	06면(사회)	돈 30만원에 눈 멀어...30대 전과자 '사형'	지역일간지
제2024-552호	인터넷 경북하나신문	5월 25일	오피니언면	사설 - 탐욕에 눈 먼 거짓말, 결국은 드러난다	인터넷신문
제2024-553호	뉴스1코리아	5월 22일	전국면	도박에 눈 멀어...연인·친구들에 3억 가로채 탕진한 30대	뉴스통신
제2024-554호	뉴스엔조이	5월 28일	연재면	[뉴스레터 '처치독' 187호] 아직도 교회 돈을 눈먼 돈처럼	인터넷신문
제2024-555호	뉴시스 (NEWSIS)	5월 16일	사회면	"끝까지 응원하자"...김호중에 눈 먼 팬들 투표·예매 독려	뉴스통신
제2024-556호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6월 3일	경제면	삼성물산 소속 의류매장 직원, 단골·동료 카드로 7억여원 '카드깡' 사기 ...실적과 성과급에 눈먼 충성?	인터넷신문
제2024-557호	마이데일리	4월 17일		"저것이 감히 손석구를..." 홍석천, 질투에 눈멀어 폭주 [라스]	인터넷신문
제2024-558호	인터넷 목포타임즈	5월 29일	뉴스면	160억 투입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 박람회, "눈먼 돈, 여기저기"	인터넷신문
제2024-559호	무등일보	5월 30일	11면(지역)	[기자의 눈] '젓밥'에만 눈 먼 완도군의회	지역일간지
제2024-560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5월 28일		기재부, 눈 먼 보조금 통폐합...준속기한 만료사업 66% 정리	인터넷신문

■ 제2024-5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61호	서울경제	6월 5일	08면 (금융/재테크)	"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	중앙일간지
제2024-562호	인터넷 서울경제	6월 4일	사회면	"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	인터넷신문
제2024-563호	스타뉴스 (star news)	5월 16일	엔터테인먼트 면	생각없는 소속사+눈먼 팬심+공황장애..김호중, '환장' 3단 콤보 [★FOCUS]	인터넷신문
제2024-564호	스포탈코리아	5월 15일		‘뺑소니+운전자 바뀌치기 의혹’ 김호중, 경찰 강제수사에도 팬들은 응원..눈 먼 팬심[Oh! 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565호	오에스이엔 (OSEN)	5월 15일	Entertainment 면	‘뺑소니+운전자 바뀌치기 의혹’ 김호중, 경찰 강제수사에도 팬들은 응원..눈 먼 팬심[Oh! 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566호	이데일리	4월 22일	02면	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 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	중앙일간지
제2024-567호	지디넷코리아	5월 16일	뉴스면	AI 개발에 눈먼 마이크로소프트..."탄소 배출량 30% ↑"	인터넷신문
제2024-568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5월 16일		"끝까지 응원하자"...김호중에 눈 먼 팬들 투표·예매 독려	인터넷신문
제2024-569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5월 28일	경제면	기재부, 눈 먼 보조금 통폐합...존속기한 만료사업 66% 정리	인터넷신문
제2024-570호	인터넷 호남타임즈	5월 29일	뉴스면	160억 투입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 박람회, "눈먼 돈, 여기저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71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4년 05월 09일 사회면 「'동네 형' 부인과 결혼, 의붓딸 성폭행 살해...'강간 아닌 합의' 인간 말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음란하고 잔인한 범죄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공표하였다. 범죄 보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잔인하거나 음란한 내용이 공표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넘어선 음란 행위 묘사, 범행 동작의 구체적 서술까지 공익에 기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독자에게 정신적 충격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7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72호	디스패치뉴스	5월 9일	핫이슈면	'동네 형' 부인과 결혼, 의붓딸 성폭행 살해..."강간 아닌 합의" 인간 말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73호	언론사명	(주)매경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매경닷컴 2024년 04월 29일 사회면 「숨진 김포 공무원, 공사 납품 압박받았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추정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발생한 김포시청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보도가 사망자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보도된 직급, 나이, 담당 업무, 발령 정보, 경력 등을 종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감시의 대상인 선출직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사건 자체의 경위를 넘어선 사망자의 신원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망자 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7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74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4월 25일	뉴스면	"업무 못 마쳐 죄송" 문자 남기고...김포 공무원 한달 만에 또 숨진 채	인터넷신문
제2024-575호	뉴스1코리아	4월 25일	전국면	김포시 소속 공무원 또 숨진채 발견...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뉴스통신
제2024-576호	매일경제	4월 27일	13면(사회)	김포에서 또 공무원 사망 업무관련 괴롭힘 여부 수사	중앙일간지
제2024-577호	인천일보 (i-Times)	4월 26일	06면(사회)	또 ... 김포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24-578호	인터넷 인천일보 (i-Times)	4월 25일	사회면	김포시 공무원 또 스스로 목숨끊어	인터넷신문
제2024-579호	인터넷 중앙신문	4월 25일	뉴스면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80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4년 04월 22일 사회면 「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결국 숨졌다… 유치장 관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경찰서 유치장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였다. 설령 이 사건 보도가 수사기관의 구금시설 관리를 점검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요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자살 수단과 방법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자살 관련 보도가 유사한 처지의 일부 독자들에게 자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묘사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8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81호	경북탐뉴스	4월 26일	종합뉴스면	바지 벗어서 목맨 피의자 유치장 관리 도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82호	언론사명	(주)전북도민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024년 05월 23일 사회 「익산 한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자살 추정 사망자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므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개인의 능동적 선택으로 표현하지 않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유사한 처지의 일부 독자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비록 해당 표현이 직접적인 단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망 사실을 묘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으며, 자살보도 관련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83호	인터넷 경남신문	6월 2일	사회면	창녕서 여성 살해한 30대, 경찰 신고 후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584호	인터넷 국민일보	6월 1일		“사람 죽었다” 자수한 30대… 신고 후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585호	나우뉴스	5월 17일	국제면	10살 소년, 학폭으로 극단적 선택…장례식에 수백 명 모였다[월드피플+]	인터넷신문
제2024-586호	인터넷 내외일보	5월 12일	정치사회·세계면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딸과 친구, 2명 모두 극단선택…“유서 내용이 이상하다?”	인터넷신문
제2024-587호	매경닷컴	5월 17일	사회면	서울보증보험 직원 극단 선택…“인사 이동 후 업무 스트레스 호소”	인터넷신문
제2024-588호	연합뉴스	5월 2일	최신기사면	염산 데리에 극단 선택까지…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실태	뉴스통신
제2024-589호	인터넷 전민일보	5월 23일	사회면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서 50대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590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5월 23일	사회면	익산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591호	조선닷컴	5월 12일	사회면	서울 강북구 보건소팀장 극단선택…강북구 “내부 조사 중”	인터넷신문
제2024-592호	충청신문	5월 10일	06면(사회)	지역농협 직원, 극단적 선택 유서에 ‘업무부담’ 호소	지역일간지
제2024-593호	쿠키뉴스	5월 13일		서울 강북구 보건소 직원 극단선택…구청 “직장내 괴롭힘 내부 조사 중”	인터넷신문
제2024-59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13일	사회일반면	강북구 보건소 팀장 극단선택…직장 내 괴롭힘 확인 절차 진행 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595호	언론사명	김 병 철 (아산투데이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아산투데이닷컴 2024년 04월 22일 경제·생활면 「척추·관절, 스포츠 외상 전문 ‘○○○○병원’ 아산에 개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 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59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596호	인터넷 인천일보 (i-Times)	5월 1일	사람들면	○○○병원, 척추·관절 의료 ‘큰 뜻’ 재다짐	인터넷신문
제2024-597호	충청투데이	4월 24일	07면(특집)	미래 의료 패러다임 천명하며 재탄생… 이젠 ‘○○’입니다	지역일간지
제2024-598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4월 23일	사회면	미래 의료 패러다임 천명하며 재탄생… 이젠 ‘○○’입니다	인터넷신문
제2024-599호	인터넷 경북일보	4월 21일	경북대구면	○○○○병원 ○○○ 병원장 "국내 최고 암요양병원으로 조성"	인터넷신문
제2024-600호	개미신문	5월 22일	개미 뉴스면	개원 9개월 만에 척추 내시경 수술 1000례 돌파	인터넷신문
제2024-601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5월 22일		개원 9개월 만에 척추 내시경 수술 1000례 돌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02호	언론사명	김 지수 (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6월 07일 뉴스면 「밀양 여중생사건 가해자 신상 44명 얼굴·명단 모음 (+○○○,○○○,○○○,○○○,○○○)」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신상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사인(私人)의 신상 정보를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및 관련자로 지목된 사인(私人)들의 초상 및 신상을 공표하였다. 일부 초상은 비식별조치 했으나, 공표된 성명, 출생년도, 출신 지역 및 학교, 직장 등을 종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해당 신상 정보가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범죄 보도에서의 신상 공표에 동의했을 여지도 없을 것이다. 설령 이 기사가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신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표된 정보의 사실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건과 무관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0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03호	더데이즈	6월 5일	엔터면	○○○ 경장 의령경찰서 근황 게시판 주소 바로가기 ○○○ 개명	인터넷신문

■ 제2024-60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04호	민심뉴스	6월 4일	뉴스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주동자 ○○○ 얼굴·이름 신상공개...유튜버 '가해자 처벌해야'(+○○○, 볼보 해고)	인터넷신문
제2024-605호	세계뉴스통신	6월 6일	사회면	밀양 성폭행 네 번째 가해자 신상공개 "악질 중 악질"	뉴스통신
제2024-606호	엠투데이 (M Today)	6월 5일	엔터테인먼트면	"직장 해고·식당 영업중단" 나락보관소,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44명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607호	커넥트뉴스 (Connect News)	6월 10일	뉴스면	밀양 성폭행 주동자의 오른팔 ○○○(개명 후 신정현) 입장..신상&인스타그램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608호	조선닷컴	6월 3일	사회면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 백종원 먹방도 논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09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씨비에스미디어캐스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노컷뉴스 2024년 05월 30일 사회면 「[단독]'내연 고소전' 차두리...아시안컵 앞두고 "대표팀 관두려 했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통신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내연 관계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한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대화자만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해당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폭로 이후 해당 선수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가 통신 내용 공표에 동의했을 여지도 없을 것이다. 설령 이 기사가 세간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은 존재하는 바, 이성 간의 사적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적 통신 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0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10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31일	뉴스면	"보고싶영" 차두리, 동시 교체 부인하더니...피소 여성에 보낸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4-611호	국제뉴스	5월 31일	스포츠면	차두리 내연녀 의혹 카톡 공개...와이프 이혼 언급도 계속	뉴스통신

■ 제2024-60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12호	뉴스 포켓	5월 30일	뉴스면	차두리, 두명의 여성과 내연 문제로 현재 충격적인 근황	인터넷신문
제2024-613호	뉴스1코리아	5월 31일	사회면	차두리 "바에서 뽀뽀한 여자? 그날 처음 봤다" 양다리 의혹에 해명	뉴스통신
제2024-614호	뉴스시스 (NEWSIS)	5월 31일	사회면	"당신 만날때도 그 친구 계속 만났어"...차두리 내연 의혹女 카톡보니	뉴스통신
제2024-615호	데일리안	5월 31일	사회면	"차두리, 딴 여자 안고 뽀뽀하고는 오해라고..." 내연의혹女 카톡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4-616호	동아닷컴	5월 31일	사회면	"차두리 양다리" "난 모르는 여자"...내연 의혹女 카톡 메시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617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5월 31일	사회면	"보고싶엉" 동시교제한 적 없다더니..피소女가 공개한 차두리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4-618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31일	문화·스포츠면	차두리, '동시교제' 절대 아니라더니...'내연 의혹' 여성과 나눈 메시지에	인터넷신문
제2024-619호	아시아경제닷컴	5월 31일	사회면	양다리 아니라던 차두리, 스토킹 피소여성에게 "보고싶다"	인터넷신문
제2024-620호	인터넷 이데일리	5월 31일	사회일반면	차두리 "보고싶어♥"...피소女가 공개한 카톡 보니	인터넷신문
제2024-621호	인터넷 중앙일보	6월 1일	사회면	"너 만날 때 딴 여자도 만남"...피소女, 차두리 '양다리 카톡'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4-62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5월 31일	사회면	"보고싶엉" 동시교제한 적 없다더니..피소女가 공개한 차두리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4-62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31일	사회일반면	"차두리 양다리" vs "여자가 스토킹" 누가 맞나...카톡 메시지 보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2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6월 17일 연예면 「최민환 이혼 이유 밝혀지자.. 금수저, 집안, 부모님 직업, 재산 재조명 (+울희 바람)」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성명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사인(私人)의 신상 정보를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 가정의 이혼 근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과거 방송에 공표되었던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관련 보도에서의 초상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비교적 널리 알려진 부모와 달리 자녀들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므로, 자녀의 초상이나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625호	언론사명	민들레(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4년 06월 01일 엔터면 「훈련병 일차려 중대장 신상 누구 여군 끄적하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강원도 소재 군부대의 훈련병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표하였다. 실명을 공표하진 않았으나, 성명의 초성, 소속 부대 및 직책, 출신학교 및 학번 등을 종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며, 해당 사건은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거나 공소 진행 중 공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당사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일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현재 미결 구금 중인 이상 형사 사법 집행을 위한 그 밖의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이 기사가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상이 사안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2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26호	살구뉴스	5월 29일	뉴스면	'12사단 사망 사건' 여중대장 폐미? 신상·얼굴·근황에 모두 경악(+사단장 인스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27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톱스타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톱스타뉴스(TopStarNews) 2024년 06월 09일 「'롤 프로게이머' ○○○(○○○), 누구길래...최근 근황 관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및 신상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초상 및 신상 정보를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의 초상 및 신상 정보를 공표하였다. 현재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며, 해당 사건은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거나 공소 진행 중 공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당사자가 과거 프로게이머 활동으로 대중에게 노출된 적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사인(私人)에 가깝고, 활동 분야와 무관한 범죄 보도에서의 신상 공표를 수인해야 할 정도의 공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사안 자체와 동일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해외 사법 당국에 구금 중이므로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그 밖의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2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28호	인터넷 남도일보	6월 9일	뉴스면	베트남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 여성...한국 '롤 프로게이머'가 범인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629호	원픽뉴스	6월 9일	사회면	"국제대회에서 우승까지.." 베트남 하노이 여성 살인사건에 롤 프로게이머 ○○○ 근황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24-63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6월 9일	국제일반면	베트남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여성...韓 '롤 프로게이머'가 범인이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31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6월 09일 뉴스면 「밀양 판결문 전문 요약 해보니...엇갈린 가해자· 피해자 근황 오열(+신상 번호)」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과거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였다. 성범죄 보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인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사실 전달을 넘어선 구체적 범행 수법 및 동작,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공표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저해하고, 불의의 추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범죄 묘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632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뉴스1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4년 06월 01일 사회면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kg 계모 위에서 뛰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학대 행위 및 피해 아동의 피해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였다. 아동학대 보도의 특성상,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에 대한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사실 전달을 넘어선, 구체적 학대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공표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불의의 추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3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33호	e머니에스 (e money S)	6월 1일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kg 계모 위에서 뛰었다	인터넷신문

■ 제2024-63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34호	인터넷 내외일보	6월 1일	뉴스면	초3 아들, 13시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한 엄마...점심약속 나가기도	인터넷신문
제2024-635호	대전일보닷컴	6월 1일	뉴스면	9살 아들 여행 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국민 공분 산 4년 전 사건	인터넷신문
제2024-636호	디스패치뉴스	6월 2일	핫이슈면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kg 계모 위에서 뛰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637호	인터넷 이데일리	6월 1일	사회일반면	"엄마 숨 안 쉬어줘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38호	언론사명	(주)충북인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충북인뉴스 2024년 06월 13일 사회면 「조합 돈은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지역 주택정비사업 자금의 부당 집행 논란을 보도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 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39호	경남도민일보	6월 26일	10면(사회)	승진 눈 멀어 허위 작품 낸 교사 2심서 감형	지역일간지
제2024-640호	경남신문	7월 3일	01면(종합)	감투싸움에 눈먼 지방의원	지역일간지
제2024-641호	인터넷 경남신문	7월 2일		감투싸움에 눈먼 지방의원	인터넷신문
제2024-642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30일		'욕망'에 눈 멀어 여성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2심도 실형 선고	인터넷신문
제2024-643호	기호일보	6월 19일	05면(사회)	돈에 눈 먼 IT 개발자 부업으로 성착취물 30만 건 유통	지역일간지

■ 제2024-6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44호	인터넷 기호일보	6월 19일	뉴스면	돈에 눈 먼 IT 개발자 부업으로 성착취물 30만 건 유통	인터넷신문
제2024-645호	대한경제	6월 25일	11면(건설)	항만 공사에 초점 맞춰 설계비 책정... 국토부의 '눈 먼 행정'	중앙일간지
제2024-646호	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	7월 1일	사회면	"젓밥에 눈먼 여수도시관리공단 A노조위원장 부조리 직위해제...경찰, 피의자 신분 전환"	인터넷신문
제2024-647호	아시아경제 닷컴	6월 28일	사회면	"지원금에 눈먼 동물병원, 만삭 길고양이까지 중성화수술"	인터넷신문
제2024-648호	조선일보	6월 25일	05면(사회)	"전공의, 밥그릇에 눈먼 의사로 몰려... 지금 상태론 복귀 불가능"	중앙일간지
제2024-649호	조선닷컴	6월 25일	사회면	"전공의, 밥그릇에 눈먼 의사로 몰려... 지금 상태론 복귀 불가능"	인터넷신문
제2024-650호	인터넷 천지일보	6월 27일	경제면	'눈 먼 돈' 쟁기는 조합장 줄어드나... 오늘부터 관리감독 강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51호	언론사명	(주)아이뉴스이십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아이뉴스24(inews24) 2024년 07월 05일 사회면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극단적 선택 후 사망」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자살을 선택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 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자살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묘사될 수 없으며,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위기에 노출된 불특정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비록 해당 표현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관용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으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5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52호	경남신문	6월 3일	05면	창녕서 여성 살해한 30대 경찰 신고 후 극단적 선택	지역일간지
제2024-653호	광남일보	5월 27일	06면(사회)	'자금난' 지역 건설업체 CEO 극단적 선택	지역일간지

■ 제2024-65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54호	인터넷 광남일보	5월 26일	사회면	‘자금난’ 지역 건설업체 CEO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655호	인터넷 국제신문	6월 1일	사회면	경남서 30대 남성, “또래 여성 죽었다” 경찰에 자수 후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656호	굿데이뉴스	6월 26일		60대 남자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657호	글로벌경제신문 (GETNEWS)	7월 1일	전국면	모 중학교 무자격 교장 민원 압박에 장학사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658호	뉴데일리 (New Daily)	7월 3일	부산울산경남 면	부산교육청 장학사 '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 민원인은 '학부모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제2024-659호	뉴스1코리아	7월 5일	전국면	또래 여학생에 '칼부림'한 10대 극단선택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뉴스통신
제2024-660호	뉴시스 (NEWSIS)	7월 4일	지방면	장학사 극단적 선택...부산교육청, 악성 민원 현직 교장 형사 고발	뉴스통신
제2024-661호	동아닷컴	7월 5일	사회면	안산시 또래 여학생에 칼부림 후 극단선택 시도 10대男 결국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4-662호	인터넷 동양일보	6월 30일	사회면	대전서 3살.6살 두 딸과 아버지 숨진 채 발견... "극단 선택 추정 유서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4-663호	인터넷 매일신문	6월 29일		포항 골프장 회원권 사기 혐의 50대男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664호	부울경 CNB뉴스	7월 5일	교육면	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린 A장학사의 극단적 선택...해당 학교 입장 논란 가중	인터넷신문
제2024-665호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7월 4일	사회면	부산교육청, 현직교장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수차례 악성 민원제기 장학사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666호	인터넷 시사저널	7월 4일		“장학사 극단 선택 진실 밝혀야” 부산교육청, 현직 학교장 고발	인터넷신문
제2024-667호	씨엔비뉴스 (CNBNEWS)	7월 5일		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린 A장학사의 극단적 선택...해당 학교 입장 논란 가중	인터넷신문
제2024-668호	전북도민일보	5월 24일	05면(사회)	익산 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 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조사	지역일간지
제2024-669호	전북중앙신문	5월 24일	06면	익산 수상레저선착장서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지역일간지
제2024-670호	프라임경제	7월 4일	지역면	하운수, 장학사 극단적 선택 '비통'...부산교육청, 관련자 형사고발	인터넷신문
제2024-671호	프레스리안 (Pressian)	7월 4일		부산교육청 장학사 극단 선택...민원 제기한 현직 학교장 형사고발	인터넷신문

■ 제2024-65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72호	인터넷 호남매일	6월 17일	뉴스면	이자 120% 사채업자 구속...협박 당한 채무자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73호	언론사명	사단법인 단비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단비뉴스 2024년 04월 26일 청년면 「마약 끊고 싶어도 도움 청할 곳 없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마약류 약품의 사용량, 구입 경로 및 가격, 복용 방법, 환각 효능 등을 상세히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청년층의 마약 중독 실태를 보도하면서, 마약류의 종류 및 관련 은어, 가격, 투약 후의 환각 상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였다. 마약 관련 보도의 특성상,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약 관련 정보 및 경험이 보도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사실 전달을 넘어선 마약 구입 방법 및 가격, 투약 방법, 투약 후의 환각 경험 묘사 등의 공표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마약류 사용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의 투약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7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74호	일요시사	6월 2일	22면(사회)	자랑하듯 꺼내는 '흰색 가루'	주간지
제2024-675호	인터넷 일요시사	6월 3일	사회면	<단독> ‘술자리 대놓고...’ 케타민 투약 현장 포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76호	언론사명	아시아투데이(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ASIATODAY닷컴 2024년 06월 13일 사회면 「'○○○○병원' 신촌 학맥 포진… 인공관절 국산화로 명성」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보도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 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77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6월 14일	24면(건강)	‘○○○○병원’ 신촌 학맥 포진… 인공관절 국산화로 명성	중앙일간지
제2024-678호	주간현대	6월 14일	NewsGram면	세브란스 아·태 최고 병원 선정...협력병원 ‘○○○○병원’도 주목	인터넷신문
제2024-679호	코리아 헬스로그	6월 19일	NEWS면	○○○○병원,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인공관절 메카로 전진	인터넷신문
제2024-680호	인터넷 경남일보	6월 20일	사회면	○○○○요양병원, 다제내성균 관리 시스템 갖추고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681호	노컷뉴스	6월 20일	전국면	창원서 감염관리 시스템 갖춘 요양병원 문연다...○○○○요양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682호	뉴스1코리아	6월 20일	전국면	○○○○요양병원, 창원 봉림동으로 신축 이전...감염관리 시스템 갖춰	뉴스통신
제2024-683호	뉴시스 (NEWSIS)	6월 20일	지방면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했다"...'이 병원' 개원	뉴스통신
제2024-684호	아산 투데이닷컴	5월 27일	경제·생활면	"자부심 느끼는 대표 의료기관 될 것" 아산 ○○○○병원 힘찬 첫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85호	언론사명	(주)매경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매경닷컴 2024년 05월 24일 사회면 「“온몸 조각 낸 후 카레가루와 섞어 유기”...방글라데시 의원 인도서 ‘엽기 피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의 제목 및 본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공표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음란하거나 잔인한 범죄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살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잔인한 범죄 내용을 제목 및 본문에 보도하였다. 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전반적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사실 전달을 넘어선, 지나치게 자극적인 범죄 방법의 묘사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 독자들의 공포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8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86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24일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엽기적 '피살'...'시신 조각 내 카레가루와 섞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687호	뉴스1코리아	5월 24일	국제면	인도 온 방글라데시 의원 '엽기' 피살...온몸 조각 내 카레 가루와 섞어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4-688호	언론사명	(주)내외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내외일보 2024년 06월 17일 정치사회·세계면 「"두 살 아들 죽여 먹서기에 갈아서 유기" 사이코패스 아빠 '산상공개'...40대에 출소」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의 제목 및 본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공표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음란하거나 잔인한 범죄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한 유튜버가 재공표한 과거 여수의 자녀 살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잔인한 범죄 내용을 제목 및 본문에 보도하였다. 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전반적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사실 전달을 넘어선 지나치게 자극적인 범죄 방법의 묘사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 독자들의 공포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8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89호	뉴스1코리아	6월 17일	사회면	"두 살 아들 살해, 갈아서 유기...전형적 사이코패스, 40대에 출소" 신상공개	뉴스통신
제2024-690호	데일리안	6월 19일	사회면	"두살 아들 살해, 시신 갈아 바다에 뿌려"...범죄자 신상 유튜브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691호	디스패치뉴스	6월 17일	SNSFeed면	"두 살 아들 살해, 갈아서 유기...전형적 사이코패스, 40대에 출소" 신상공개	인터넷신문
제2024-692호	인터넷 문화일보	6월 18일	사회면	유튜브서 또 범죄자 신상공개..."아들 때려죽인 뒤 시신 갈아 바다에 뿌린 XXX"	인터넷신문
제2024-693호	살구뉴스	6월 17일	뉴스면	여수 2살 아들 삶고 갈아서 유기한 '사이코패스' 가해자 40대에 출소해 모두 충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9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6월 25일 연예면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늘 가슴 한구석 무겁고 시리고 아팠다.." 심경 고백 (+자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성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의 이혼 경위를 보도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부부의 SNS를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관련 보도에서의 초상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 비교적 널리 알려진 부모와 달리 자녀들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므로, 논점과 무관한 자녀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695호	언론사명	정준철(민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민심뉴스 2024년 07월 03일 연예면 「교사 성희롱·폭언 논란 폭로된 미스터트롯3 출연 예정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누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신상 정보 및 사적 통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프로그램 출연 예정자에 대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모 트로트 가수를 논란의 당사자로 특정하고 성명, 신상 정보 및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가수인 당사자가 스스로 신상을 공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 언행에 대한 보도에서의 신상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공표된 통신내용 역시 담당 교사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정적 사안이므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공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유명세로 출연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데뷔 전 사인(私人)으로 주고 받은 사적 대화의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정보 및 사적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696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프리덤엔라이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프리덤엔라이프 2024년 06월 27일 전체면 「[단독] ○○○(개명 ○○○)·○○○, 허재 아들 허웅 협박… “데이트 폭력 있었다”…마약 투약도 약점 잡혔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 및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및 성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농구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의 전 연인 및 관련 인물의 초상 및 성명을 공표하였다. 보도가 상호 간의 고소·고발 및 과거 범죄 혐의 등을 다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표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농구선수의 전 연인과 범죄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인물의 경우,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되었거나 향후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과거 방송 출연으로 일정 기간 대중에게 알려진 적 있으나, 현재는 사인(私人)에 가까울 것이다. 설령 이 보도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신상 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 보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사건 자체와 동일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초상, 성명 등 신상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69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697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7월 5일	스포츠면	허웅 "친자 맞는지 의심→항상 결혼하고 싶었다" 상반된 주장…입장 발표에도 '싸늘' [TOP이슈]	인터넷신문
제2024-698호	살구뉴스	6월 28일	연예면	'낙태 논란' 허웅 전여친 "임신 중 강제 성관계 요구" 폭로 내용에 모두 충격 (+○○○)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699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7월 18일 연예면 「카라콜라 야반도주? 두 아들 건다더니 수익정지 나자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와이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및 초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공갈·협박으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인물 배우자의 초상 및 신상을 공표하였다. 남편에 대한 부정적 보도임을 감안할 때, 초상 및 신상 공표에 대한 배우자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배우자가 과거 남편의 개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이 보도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사건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초상 및 신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성명 및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700호	언론사명	배시우(커넥트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커넥트뉴스(Connect News) 2024년 07월 25일 방송/연예면 「'두 얼굴' 강경준..앞에선 장신영 외조하는 척, 뒤에선 유부녀와 불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상간 의혹으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의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해당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주요 논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보도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은 존재하는 바, 혼외 이성 간 애정표현 등의 사적인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0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01호	살구뉴스	7월 27일	연예면	"빨리 끝내고 싶다"...상간남 소송 강경준, 아내 장신영과 충격적인 현재 상태 (+이혼, 외도녀)	인터넷신문
제2024-702호	오토트리뷴	7월 18일	뉴스면	"합의도 못했더니"... 불륜 의혹 강경준, 긴 침묵 끝 전해진 행보에 '눈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03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7월 01일 뉴스면 「르노코리아 ○○○ 누구?...자동차 손가락 폐미 메갈 논란 재조명 (+얼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및 초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기업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의 성별 비하 동작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직원의 성명과 초상을 공표하였다. 보도 내 초상을 비식별조치 했으나 정도가 미미하며, 회사명 등의 정보를 종합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홍보 영상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충분히 짐작되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논란에 대한 보도에서의 초상 및 성명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보도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사건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私人)의 성명 및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성명 및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0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04호	모터플렉스 (Motor plex)	7월 4일	뉴스면	르노코리아 남혐 손가락 논란, 프랑스 언론도 거론 '국제적 망신살'	인터넷신문
제2024-705호	민심뉴스	7월 3일	뉴스면	르노코리아 폐미 메갈 제스처 ○○○ 리포터디 신상 얼굴유출 논란, 사과문 작성했으나 역풍맞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06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7월 12일 스포츠면 「"양다리에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국가대표 출신 프로야구 선수 사생활 폭로에 KT 박영현 근황 재조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프로 야구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의 사적 통신 내용을 공표하였다. 해당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부정적인 행실에 대한 대화라는 점에서 공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보도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은 존재하는 바, 이성 간의 내밀하고 구체적인 사적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0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07호	살구뉴스	7월 11일	스포츠면	프로야구 선수 박영현 양다리, 임신, 낙태, 연애 논란 총정리 (+초단, 썬샷)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08호	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6월 24일 연예면 「연기학원 대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범인 신상·얼굴 공개 (+청주 ○○○○ ○○」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 및 신상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연기 전문학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지역 연기학원 대표의 초상 및 신상을 공표하였다. 현재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고, 해당 사건은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거나 향후 공개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당사자가 과거에 방송 출연 등의 공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대중에게 인지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범죄 보도에서의 신상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공적 인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 당사자가 현재 미결 구금 중인 이상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긴급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설령 이 보도가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사건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09호	원픽뉴스	6월 24일	연예면	"학원비 빌미로 성관계를"... 연기학원 유명 배우 원장 성폭행 혐의, 청주 ○○○○ ○○ 근황 재조명(+누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10호	언론사명	(주)에너지경제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에너지경제 2024년 06월 17일 인터뷰/오피니언면 「[기자의 눈] 정부의 '외눈박이' 마약·도박 정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정부의 마약 및 도박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눈박이'라는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 에서 지양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11호	땅집고	7월 3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결정장애' 대광위...12일 공청회, 이번엔 결정할까	인터넷신문
제2024-712호	경기신문	7월 15일	01면(종합)	아리셀 화재 '폐주기식' 지원에 '눈먼 돈' 논란 수면 위	지역일간지
제2024-713호	인터넷 경기신문	7월 15일	사회면	지자체 지원금만 2억 573만 원"...화성 아리셀 공장 '눈먼 돈'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4-714호	경기일보	7월 25일	19면 (사설/칼럼)	눈먼 용도변경 특혜 논란... 중구 행정의 위신 문제다	지역일간지
제2024-715호	인터넷 경기일보	7월 25일	오피니언면	[사설] 눈먼 용도변경 특혜 논란... 중구 행정의 위신 문제다	인터넷신문
제2024-716호	뉴스에듀 (newsedu)	7월 31일	사회면	"회사돈은 눈 먼 돈" 큐텐, 티몬·위메프 대표 승인 없이 자금 빼 써 졌다	인터넷신문
제2024-717호	뉴스시스 (NEWSIS)	6월 21일	지방면	지역화폐 혜택 눈멀어 신분증 위조한 의사, 징역형 선고유예	뉴스통신
제2024-718호	대전일보	8월 2일	01면(종합)	당선에 눈먼 의원님들... 정치권 사법 리스크	지역일간지
제2024-719호	디지털 조선일보	7월 9일	IT/과학면	"AI 뜰 때 노 젓자"... 돈에 눈먼 협단체 난립에 기업만 울상	인터넷신문
제2024-720호	문화뉴스	7월 30일	라이프면	'타로' 오유진, 인기에 눈 먼 BJ로 변신...광기 어린 라이브 '피싱'	인터넷신문
제2024-721호	부산닷컴	7월 11일	사회면	감투에 눈먼 의령군의회...여당 보이콧에 후반기 의장 선출 불발	인터넷신문

■ 제2024-7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22호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7월 13일	사회면	서산시. “서산시민의 세금은 눈먼 돈”, 서산시 자율방범대 특혜 의혹!	인터넷신문
제2024-723호	인터넷 브릿지 경제신문	7월 15일	뉴스면	[단독] 가족수당은 ‘눈먼돈’?...공공기관 악용 있따르고 감시는 ‘허술’	인터넷신문
제2024-724호	인터넷 서울신문	7월 25일	사회면	질투에 눈 멀어...짝사랑女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	인터넷신문
제2024-725호	인터넷 세계일보	6월 13일	사회면	발 쏘서 넣던 남자...한정판에 눈먼 신발 도둑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726호	엑스포즈뉴스	7월 31일	연예면	'타로' 오유진, 인기에 눈 먼 BJ 썬자로 변신...‘광기 어린’ 라이브	인터넷신문
제2024-727호	영남투데이	7월 23일	영남의 오늘면	상주·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는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728호	위키트리 (Wikitree)	7월 25일	사회면	질투에 눈 멀어 짝사랑하던 여성을 흉기 살해한 탈북민 (대구)	인터넷신문
제2024-729호	인터넷 주간 노동자 연대	6월 27일	전체 기사면	이윤에 눈멀어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인터넷신문
제2024-730호	중소기업 신문	7월 17일	종합면	장경덕의 정글노믹스(132) “그때 노키아는 성공의 광채에 눈이 멀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731호	프레스리안 (Pressian)	7월 26일		[단독] 나랏돈은 눈먼돈?...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안동시 장애인 단체' 수사 의뢰	인터넷신문
제2024-732호	헤럴드경제	7월 25일	10면(정치)	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눈 먼 현금 지원’ 받아갔다	중앙일간지
제2024-73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25일		눈 먼 현금지원...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타갔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34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4년 07월 10일 사회면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의 제목 및 본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공표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과거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공표하고 제목에 이를 부각하였다. 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달 및 심각성 고발 등의 필요 범위에 한해 범죄 묘사가 공표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 경위 등의 사실 전달을 넘어선, 지나치게 상세하고 잔인한 범죄 수법의 공표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독자들의 공포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3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35호	인터넷 내외일보	7월 10일	정치사회·세계 면	여학생 시신과 성행위 후 살점 모두 도려내..."인체 해부하고 싶었다"	인터넷신문
제2024-736호	디스패치뉴스	7월 11일	SNSFeed면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인터넷신문
제2024-737호	인터넷 세계일보	7월 10일	사회면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	인터넷신문
제2024-738호	인사이트	7월 10일		"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저지른 10대 '악마'의 끔찍한 만행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39호	언론사명	(주)내외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내외일보 2024년 07월 16일 정치사회·세계면 「20대 女직장동료 성폭행하고 극단 선택한 50대男...」"비번 알고 있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표현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자살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묘사될 수 없으며,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위기에 노출된 불특정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비록 해당 표현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관용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으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40호	인터넷 금강일보	7월 26일	사회면	군 사망사고 잇달아... 국군포천병원서 병사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741호	매경닷컴	6월 23일	사회면	20대 남성, 아버지 살해 후 극단 선택...한밤 중 무슨 일이	인터넷신문
제2024-742호	인터넷 파인뉴스투데이	7월 14일	뉴스일반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 극단적 선택..충격	인터넷신문
제2024-743호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BUSINESS)	7월 16일	한경 BUSINESS면	20대 前직장동료 성폭행한 50대 男...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44호	언론사명	김태봉(개미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개미신문 2024년 07월 06일 개미뉴스면 「시청앞 ○○한의원, 2일 그랜드 오픈」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 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4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45호	골든타임즈 (goldentimes)	7월 3일	경제면	시청앞 ○○한의원, 2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746호	포스트24	7월 2일	뉴스홈면	시청앞 ○○한의원, 2일 그랜드 오픈... 통증·척추질환 등 디지털 질병 치료	인터넷신문
제2024-747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7월 6일	통합뉴스면	시청앞 ○○한의원, 2일 그랜드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4-748호	중부일보	7월 9일	12면	부모님 모시듯... 어르신 치유 성심을 다합니다	지역일간지
제2024-749호	인터넷 중부일보	7월 8일	경기면	[창간 33년] 광주 ○○요양병원, 부모님 모시듯... 어르신 치유 성심을 다합니다	인터넷신문
제2024-750호	경남연합일보	6월 21일	16면(건강)	창원서 감염관리 시스템 갖춘 요양병원 문 열다	지역일간지
제2024-751호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6월 20일	뉴스면	창원서 감염관리 시스템 갖춘 요양병원 문 열다	인터넷신문
제2024-752호	미디어데일	6월 20일	메디컬면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했다"...'이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53호	언론사명	한병인(파이낸셜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2024년 07월 19일 금융면 「[단독]“동일 진단서, 한 보험사만 無지급” 무심코 동의한 ‘의료자문’ 발목」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개인정보가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보험 가입자의 제보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입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표하였다. 보도에 인용된 진단서가 보험 가입자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명, 주소 등의 기타 개인정보들이 비식별 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유독 연락처의 공표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동의 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 사실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증 자료의 공표 필요성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의 경위와 무관한 사인(私人)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개인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75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7월 24일 뉴스면 「양주 태권도장 관장 신상·이름, 위치 어디? ○○○○태권도 ○○○ 언급 되는 이유」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양주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성명 및 학원명을 공표하였다. 사건 이후 학원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학원이 수년간 해당 학원명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이 단독 대표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성명 및 학원명을 통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현재 피고인에 그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 되었거나 향후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당사자는 공적 인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인(私人)이며, 현재 미결구금 중이므로 형사 사법 집행을 위한 그 밖의 긴급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설령 이 보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누구인지가 사안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5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55호	민심뉴스	7월 15일	뉴스면	양주 태권도장 5세 아동 심정지 사건 도장 어디?... 용의자 CCTV 삭제, 아동학대 정황 포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5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4년 07월 30일 뉴스&이슈면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 ○○○○ '축' 덕분에 붙잡혀... 검찰 체포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관련 보도 및 후속 보도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고 사실 공표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성명, 소속 등의 구체적 신상을 공표한 바 없다 하더라도, 보건 교사는 학교 내 극히 소수인 점, 피의자들이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소속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 중이고, 별도의 형사 조치가 있기까지는 인신에 제약이 없는 바, 신고자 보복 등의 예방을 위한 보호 이익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고 경위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5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57호	sportschosun.com	7월 29일	사회면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학교 집에 찾아가 성폭행...20대 2명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4-758호	인터넷 경향신문	8월 16일	사회면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학교 집 찾아가 성폭행...20대 2명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4-759호	인터넷 내외일보	7월 30일	뉴스면	"부모님 없지?"...채팅으로 확인하고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	인터넷신문
제2024-760호	뉴스1코리아	7월 30일	전국면	SNS서 알게 된 초등생 집 침입해 성폭행...20대 2명 검거	뉴스통신
제2024-761호	뉴시스 (NEWSIS)	7월 30일	지방면	SNS로 대화하다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집 찾아가 범행	뉴스통신
제2024-762호	대전일보닷컴	7월 29일	대전·세종면	채팅으로 안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2명 입건	인터넷신문

■ 제2024-75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63호	데일리안	7월 30일	사회면	"혼자 있는 거 맞지?" 초등생 집에 와 성폭행...'인면수심' 남성들	인터넷신문
제2024-764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7월 30일	정치·사회·글로벌면	12살 초등학생 성폭행범에 체포영장 기각..."가해자들은 일상생활, 피해자만 고통"	인터넷신문
제2024-765호	동아닷컴	7월 30일	사회면	SNS로 대화하다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집 찾아가 범행	인터넷신문
제2024-766호	인터넷 동양일보	7월 30일	사회면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체포영장 기각'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4-767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7월 29일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20대 2명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4-768호	매경닷컴	7월 29일	사회면	초등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2명...보건교사가 '이것'으로 알아채	인터넷신문
제2024-769호	인터넷 매일신문	7월 30일		"초등학생 딸 성폭행한 20대 남성들 풀려나"...아버지 분노	인터넷신문
제2024-770호	인터넷 문화일보	7월 31일	사회면	"집 비었니?" 혼자 있는 초등女 찾아와 잇단 성폭행...체포영장 기각	인터넷신문
제2024-771호	부산닷컴	7월 30일		"부모님 나가셨지?" 혼자 있는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들	인터넷신문
제2024-772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7월 30일		"초등생딸 성폭행한 男2명, 회사·학교 다니고 있어... 체포조차 안해" 父 분노	인터넷신문
제2024-773호	인터넷 서울신문	7월 30일	사회면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생 찾아가 성폭행한 20대들	인터넷신문
제2024-774호	인터넷 세계일보	7월 30일	사회면	12세女 '멍'자국 이상하게 여긴 보건교사 직감 빚냈다	인터넷신문
제2024-775호	인터넷 스포츠한국	7월 30일	경제면	"부모님 나갔지? 아오 불안해" 12세女 집 찾아가 성폭행 20대 남성 2명 '불구속'	인터넷신문
제2024-776호	인터넷 시사저널	7월 30일	사회면	초등생 여아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들...불구속에 피해자 가족 '울분'	인터넷신문
제2024-777호	아시아경제닷컴	7월 30일	사회면	초등생인줄 알면서도 성폭행한 20대...검찰은 "도주우려없다" 체포영장 기각	인터넷신문
제2024-778호	인터넷 아주경제	7월 30일		초등학생 홀로 있는 집 찾아가 성폭행...20대男 2인 체포영장 기각	인터넷신문
제2024-779호	연합뉴스	7월 29일	최신기사면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20대 2명 입건	뉴스통신
제2024-780호	위키트리 (Wikitree)	7월 30일	사회면	충격 전말...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2명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4-781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30일	사회일반면	"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직장인·학생 풀려나"...父 분노	인터넷신문

■ 제2024-75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82호	인터넷 중앙일보	7월 30일	사회면	"혼자 있어?" 채팅하던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들	인터넷신문
제2024-783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7월 30일	사회면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생 찾아가 성폭행한 20대들	인터넷신문
제2024-784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30일	사회면	"초등생딸 성폭행한 男2명, 회사·학교 다니고 있어... 체포조차 안해"父 분노	인터넷신문
제2024-785호	인터넷 한국경제	7월 30일	사회면	"부모님 나갔지?" 초등생 성폭행한 20대들, 풀려난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4-78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30일	사회면	초등생 집까지 찾아가 성폭행한 20대男...‘이것’ 본 교사가 알아채, 체포영장 ‘기각’에 분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787호	언론사명	(주)뉴스엔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엔 2024년 08월 21일 연예면 「김숙 “5자매 막내라 결정 장애, 사람 그림 손발 안 그려” (연참)[결정적장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결정을 어려워하는 연인' 관련 사연을 보도하면서, '결정 장애'라는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 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78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88호	인터넷 중소기업뉴스	9월 2일	라이프면	추석 선물 ‘선택 장애’? 4대 키워드로 고민 끝	인터넷신문
제2024-789호	스카이데일리닷컴 (skyedaily)	8월 29일		[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언제까지 절름발이 反日몰이 고수할 것인가	인터넷신문
제2024-790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9월 11일	경제면	[취재후일담]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통합 앞둔 에어부산 ‘병어리 냉가슴’	인터넷신문

■ 제2024-78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791호	아시아경제 닷컴	7월 25일	국제면	"그냥 죽게 놔둬"...트럼프, 장애있는 조카 아들에 막말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4-792호	인사이트	7월 25일	뉴스&이슈면	지적장애 앓는 9살 동급생 옷 벗겨 쫓아낸 친구... 어머니는 CCTV 보고 '좌절'	인터넷신문
제2024-793호	뉴데일리 (New Daily)	8월 14일	경제면	줄줄 새는 '눈먼돈' 정비조합비 ... 정부, 도정법 개정 속도낸다	인터넷신문
제2024-794호	데일리안	8월 5일	사회면	평택시의회 국힘, 원구성 협의 지연에 '젯밥'에 눈 먼 민주당	인터넷신문
제2024-795호	인터넷 문화일보	9월 6일	경제면	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인터넷신문
제2024-796호	문화일보	9월 6일	29면 (오피니언)	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	중앙일간지
제2024-797호	스포탈코리아	9월 2일		충격! 김민재 친정팀, '역대급 손해' 감수하기로...돈에 눈먼 FW 2군 강등 확정 "규칙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어"	인터넷신문
제2024-798호	온라인 충청일보	8월 20일	충남면	[취재수첩] "편 가르기와 감투에 눈 먼 의원들께"	인터넷신문
제2024-799호	인터넷 자유일보	9월 3일	기획특집면	'R&D 예산'은 눈먼 돈?...나랏돈으로 암호화폐 채굴한 식품연구원 실장 해임	인터넷신문
제2024-800호	조선닷컴	7월 26일	오피니언면	[사설]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별인 문 정부	인터넷신문
제2024-801호	인터넷 중도일보	8월 18일	전국면	[기자수첩] 하남시 행정 광고비 예산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802호	지티티코리아 (GTT KOREA)	8월 28일		눈먼 지출 잡아내는 '지출 통합 관리' 솔루션	인터넷신문
제2024-803호	충청일보	8월 21일	11면	[취재수첩] "편 가르기와 감투에 눈 먼 의원들께"	지역일간지
제2024-804호	펜앤드마이크 (PenN)	8월 6일	펜앤쇼츠면	정무적 판단에 눈이 멀어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김명수	인터넷신문
제2024-805호	인터넷 한국경제	8월 28일	라이프면	안세영 효과?...체육회 우회하던 '눈먼 돈' 400억 지자체로 직진	인터넷신문
제2024-806호	한국일보	8월 15일	08면(기획)	'수거량'에만 관심 갖는 정부... 관리 사각지대 속 해양 쓰레기 예산 '눈먼 돈'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제2024-807호	언론사명	(주)뉴스시스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4년 08월 01일 사회면 「결혼 앞둔 지인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한 50대 남성...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표현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자살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묘사될 수 없으며,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위기에 노출된 불특정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비록 해당 표현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관용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으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8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08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8월 1일	뉴스면	결혼앞둔 여성 살해한 50대, 사망 전 사진 '신랑'에 전송→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09호	STN NEWS	9월 12일	스포츠면	[이슈 체크] '단장의 극단적인 선택+수개월 임금 미지급' 전주시민축구단의 뒤숭숭한 분위기	인터넷신문
제2024-810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3일	시사면	[단독]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김포FC 전 감독 등 3명 무혐의 결론	인터넷신문
제2024-811호	국제뉴스	8월 23일	사회면	NH농협은행, 110억 원대 횡령...감사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	뉴스통신
제2024-812호	뉴스1코리아	8월 17일	국제면	결혼 5개월 만에 간호사 아내가 의사와 불륜...화해 여행서 남편 극단선택	뉴스통신
제2024-813호	뉴스퀘스트	8월 23일	경제/산업면	NH농협은행, 100억원대 금융사고 발생...연루 직원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14호	뉴스후플러스	8월 31일	사회·문화면	'한울원자력본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20대 직원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15호	더퍼블릭	9월 3일	SOCIETY면	한수원 20대 직원 극단적 선택 두고 뒷말 '무성'...직장 내 괴롭힘 있었나	인터넷신문
제2024-816호	데일리엔케이 (The DailyNK)	8월 9일	지금북한은면	폭우로 농경지 피해 본 회령시 주민, 절망감에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17호	데일리팜 (Dailypharm)	7월 24일	약국·병원면	약국 민원에 의료대란 격무...극단적 선택한 보건소 주무관	인터넷신문

■ 제2024-8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18호	디지털데일리	8월 23일	뉴스면	NH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19호	메디컬투데이	8월 26일	산업면	NH농협은행 직원 '117억 횡령' 후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20호	인터넷 문화일보	7월 23일	사회면	'업무과중' 호소 30대 수사관 극단선택에… 동료 경찰들 분노	인터넷신문
제2024-821호	백세시대	9월 5일	경제면	한울원자력본부, 직원 극단적 선택… 블라인드 앱 '직장내 괴롭힘' 제기	인터넷신문
제2024-822호	백제뉴스	8월 29일	충남면	28일 당진 송악읍 50대 여성 번개탄 피워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23호	부산닷컴	8월 23일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연루 직원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24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8월 2일		결혼 앞둔女 살해한 50대男, 예비신랑에 사진 전송 후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25호	인터넷 서울경제	8월 13일	사회면	86회 폭언·4회 폭행…20대 청년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선처 호소	인터넷신문
제2024-826호	아시아경제 닷컴	8월 1일	사회면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살해한 50대, 범행 후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27호	연합뉴스	9월 2일	세계면	英, 교장 극단선택 후 학교 등급 매기기 폐지	뉴스통신
제2024-828호	위클리서울i	9월 5일	정치·사회면	한수원 20대 직원 극단적 선택...사측 "직장 내 괴롭힘, 사실무근"	인터넷신문
제2024-829호	인터넷 이데일리	8월 1일	사회일반면	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男...범행 후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30호	인디뉴스	9월 2일	이슈면	부부싸움 도중 40대 남성 부인 흉기로 찌른 후 극단적 선택..부친에서 발생한 비극	인터넷신문
제2024-831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9월 3일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김포FC, 전 감독 등 3명 무혐의...유족 반발	인터넷신문
제2024-83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8월 2일	사회면	결혼 앞둔女 살해한 50대男, 예비신랑에 사진 전송 후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33호	퍼스널포커스	8월 23일	전문인면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 원대 금융사고...연루 직원, 내부 감사 중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34호	펜앤드마이크 (PenN)	8월 23일	경제·산업면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대 횡령'...연루직원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35호	포쓰저널 (4th journal)	8월 23일	경제면	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사고...연루 직원은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36호	포인트데일리	9월 2일	산업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의혹 '일과만파'	인터넷신문

■ 제2024-8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37호	인터넷 한국경제	8월 13일	국제면	44세 한국인 남성, 태국 강물에 현금 뿌리고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838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8월 1일	사회일반면	결혼 앞둔 50대 女 살해한 50대 男, 주자장서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839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4년 09월 13일 뉴스면 「미 맥도날드 햄버거에 구더기 '바글'...'15분마다 화장실 간다」 [영상]」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다량 발견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이물질의 이미지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겪게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8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40호	e머니에스 (e money S)	9월 13일		"벌써 3kg 빠졌다"... 미국 맥도날드에 구더기 '특실' 충격	인터넷신문
제2024-841호	인터넷 YTN	9월 13일	국제면	"햄버거에 구더기가 꿈틀?"... 복통 호소한 美 여성	인터넷신문
제2024-842호	헬스조선	9월 12일		"너무 역겨워"... 햄버거 열었더니 '구더기' 우수수, 무슨 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843호	언론사명	부산파이낸셜뉴스신문(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2024년 07월 22일 의학·과학면 「강서케이병원, 개원식 열고 진료 시작...24시간 응급실·골절·외상·관절 치료 전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 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84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44호	인터넷 병원신문	7월 22일	뉴스면	○○○○병원의 목표...“내 가족 믿고 맡기는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4-845호	이투데이	7월 22일	사회면	"골절·외상·관절·척추 치료 전담"... ○○○병원, 개원식 가져, '전문의 24시간 상주'	인터넷신문
제2024-846호	인터넷 중부일보	7월 22일	라이프면	○○○○병원, 개원식 갖고 본격 병원 시작... "내 가족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 만들 것"	인터넷신문
제2024-847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22일	의학·과학면	○○○○병원, 개원식 열고 진료 시작...24시간 응급실·골절·외상·관절 치료 전담	인터넷신문
제2024-848호	헬스조선	7월 22일		골절·외상·관절·척추 치료 전담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49호	인터넷 후생신보	7월 23일	병·의원면	“골절·외상·관절·척추 치료”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50호	디지털 조선일보	8월 19일	경제면	○○○한의원, 16일 부산점 공식 개원... 체질개선 다이어트 제공	인터넷신문
제2024-851호	인터넷 내외일보	8월 8일	전국면	인천에 최대 규모 ‘○○요양병원’ 탄생	인터넷신문
제2024-852호	뉴스타운	8월 8일	수도권면	인천 최대규모 ‘○○요양병원’, 이달 개원식 앞두고 활발한 선제적 운영	인터넷신문
제2024-853호	뉴스통신	8월 9일	뉴스통신TV면	인천 최대 380여 병상 ‘○○요양병원’ 탄생	인터넷신문
제2024-854호	서울뉴스통신	8월 8일	수도권면	인천 최대 규모 380여 병상과 최첨단시설 갖춘 요양병원 탄생	뉴스통신
제2024-855호	인터넷 서울일보	8월 8일	전국면	인천 최대 규모 380여 병상과 최첨단시설 갖춘 요양병원 탄생	인터넷신문

■ 제2024-84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56호	수도권일보	8월 9일	11면(사회)	인천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 탄생... 의료계 주목	지역일간지
제2024-857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8월 8일	지역면	인천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 탄생	인터넷신문
제2024-858호	인터넷 한성일보	8월 8일	인천면	최대 규모 인천 '○○요양병원' 탄생...이달 개원식 앞두고 활발한 선제적 운영	인터넷신문
제2024-859호	SF뉴스	7월 8일	통합뉴스면	동탄 ○○○병원, 척추외과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860호	개미신문	7월 8일	개미 뉴스면	동탄 ○○○병원, 척추외과 ○○○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861호	엔터스타뉴스	7월 8일	통합뉴스면	동탄 ○○○병원, 척추외과 ○○○ 교수 초빙	인터넷신문
제2024-862호	뉴스시스 (NEWSIS)	9월 8일	지방면	'양·한방 병행' ○○○○병원, 9월 정식 개원	뉴스통신
제2024-863호	남도비즈	9월 8일	뉴스면	'양·한방 병행' ○○○○병원, 9월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64호	인터넷 남도일보	9월 8일	전남뉴스면	'양·한방 병행' ○○○○병원, 9월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65호	여수넷통뉴스	9월 4일	사람들면	[FOCUS] 여수 최초 인공지능 AI로 암 잡는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4-866호	대한의료신문	8월 2일	의원·병원면	유방 중점 ○○○○의원, 미아사거리역서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67호	스마트 투데이	8월 2일	스마트라이프면	유방 전문 ○○○○의원, 미아사거리역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68호	이로운넷	7월 31일	문화/생활/리뷰면	○○○○의원,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4-869호	경남연합일보	8월 16일	16면(기획)	칠원 ○○병원·○○요양병원, 지역 첨단 병원 '거듭'	지역일간지
제2024-870호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8월 15일	기획특집면	[기획특집] 칠원 ○○병원·○○요양병원, 지역 첨단 병원 '거듭'	인터넷신문
제2024-871호	뉴스체인	8월 28일	기업탐방면	AI첨단 병원으로 거듭난 칠원 '○○병원'·'○○요양병원'	인터넷신문
제2024-872호	인터넷 퍼블릭뉴스	8월 8일	오피니언면	○○흉부외과 ○○ 원장, 전방위적인 동시 치료로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이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873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4년 09월 09일 헬스·바이오면 「"노화로 처진 피부, 일반 레이저론 못 살려" 170가지 장비 써 본 의사의 깨달음」 제하의 기사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대상 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 기기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기 성능·효과에 관한 의료인의 보증·추천·공인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87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살구뉴스 2024년 08월 09일 연예면 「방시혁 BJ 과즙세연·전소희·오른쪽 누구? "자매뿔밥 부럽네" 여자친구 취향 한결같이♥」 제하의 기사				
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 사항	대상 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해외에서 우연히 목격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동행했던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누리꾼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87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09월 19일 연예면 「김인호 썸녀 'BJ 조예리' 전남친 폭로.. 스폰, 아우라, 업소녀 (+성형 전, 과거)」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 어려운 사적 통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최근 전 연인에 의해 부정적 과거가 폭로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사적 통신내용을 공표하였다. 당사자가 최근 동종 업계 남성 진행자와의 교제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점, 유흥업소 종사 등의 일부 의혹에 대해 방송에서 스스로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보도에 대하여 사인(私人)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이익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보도된 통신내용의 경우, 대화자만 확인 가능한 수단에 의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에 해당되고, 당사자가 반박하고 있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표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보도가 세간의 상당한 관심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명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은 존재하는 바, 대가성 성관계 및 이성 간의 내밀한 대화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통신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876호	언론사명	김아름(원픽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4년 09월 18일 연예면 「"조현병 아니야?".. '나는 술로' ○○기 ○○, 정신병원 강제입원 목격담에 강아지 학대 논란 재조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신상정보가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초상 및 방송 출연명을 공표하였다. 해당 보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입원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방송 출연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인(私人)에 불과한 인물의 구체적 병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할 사적 정보이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8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77호	국제뉴스	9월 19일	연예면	'나는 솔로' ○○기 ○○, 강제입원설 불거지자 제작진 "확인 불가"	뉴스통신
제2024-878호	살구뉴스	9월 21일	연예면	'나는솔로' ○○기 ○○, 조현병·정신병원 입원설...강아지 학대 논란 재조명 (+카톡, 모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879호	언론사명	(주)월요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월요신문 2024년 10월 07일 사회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먼허 취소' 수준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 적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전직 대통령 자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과거 선거유세 시 공표되었던, 보도된 사건과 무관한 사진의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자녀가 부모의 음주운전 관련 보도에서의 초상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피의자의 자녀는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명백히 공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피의자와는 달리 공적인물로 볼 수 없고, 사건과 무관한 자녀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피의자 자녀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8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80호	푸른한국닷컴	10월 5일	통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먼허 취소 수준 음주 운전 경찰에 입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881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4년 10월 17일 연예면 「신해철 부인 윤원희 LG 사위 윤권 스폰 진실.. 자녀, 제주 국제학교, 근황 재조명」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사망한 유명 가수의 배우자가 특정 기업인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수 부부의 미성년 자녀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방송에 출연한 혹은 SNS에 공표된, 보도된 사건과 무관한 사진의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다루는 보도에서의 초상 공표에 동의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자녀들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유명인의 자녀로 대중에 노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당사자들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바,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당사자들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자녀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882호	언론사명	정준철(민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민심뉴스 2024년 09월 28일 뉴스면 「오렌지쇼크 대표 ○○○,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구형... 피해자 증언 속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한 기업가가 각종 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기업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초상, 성명, 업체명을 공표하였다. 현재 당사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그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거나 향후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당사자가 과거에 여러 매체를 통해 이름을 알린적 있다 하더라도, 폐업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현재 미결 구금 중인 이상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그 밖의 긴급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또 설령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 범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누구인지가 반드시 사안 자체와 동일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신상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 보도의 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883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4년 09월 16일 이슈면 「짚값고 헤어드라이기 학대...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의붓아들 [뉴스속오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학대 행위 및 피해 아동의 피해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였다. 아동학대 보도의 특성상,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에 대한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구체적 학대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공표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원만한 회복을 저해하고, 불의의 추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의 사적 통신 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4-884호	언론사명	(주)아이티조선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IT조선 2024년 11월 13일 파이낸스면 「NH농협 계열사들, 도움 안되는 모기업 '농협'에 병어리 냉가슴」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한 국내투자금융사가 모기업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겪는 곤란을 보도하면서 '병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여러 보도준칙과 자율강령 등 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88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885호	뉴데일리 (New Daily)	10월 21일	경제면	'이사철 특수' 사라진 전세시장 ... 갈팡질팡 대출규제에 서민만 '병어리 냉가슴'	인터넷신문
제2024-886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9월 29일		"무인점포는 절도 범죄 소굴"...'병어리 냉가슴' 무인점포 점주들	인터넷신문
제2024-887호	전력산업신문	10월 25일	오피니언면	줄속탈원전에 의한 적자 손실에도 병어리 냉가슴앓이만 하는 한국전력!!	인터넷신문
제2024-888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0월 22일	호남취재 본부면	삼성전자 해외물량 이전...벼랑끝 몰린 협력사 '병어리냉가슴'	인터넷신문
제2024-889호	NEWSSHIN (뉴스신)	10월 17일	칼럼/기획/ 특집면	[논설] 나랏돈은 눈먼 돈...우리는 어떻게 속고 있는가?	인터넷신문
제2024-890호	TV Daily (티브이데일리)	10월 4일		박지윤·최동석, '증오'에 눈 먼 부모의 자녀들이 걱정되는 건 [기자의 눈]	인터넷신문
제2024-891호	경기&뉴스	10월 1일	종합뉴스면	농·수산업 국민혈세는 '눈먼 돈...1848억' 꿀꺽	인터넷신문
제2024-892호	경기신문	10월 30일	02면(종합)	끝까지 '김건희·이재명' 눈 먼 與野	지역일간지
제2024-893호	뉴스엔	10월 20일		정대세 폭주, 승부욕에 눈 멀어 김민지에 달리기 대결 도전장(생존왕)	인터넷신문
제2024-894호	뉴스캔	10월 10일	재해 24시면	[노동 불만족 시대] 실업급여가 눈먼 돈?...폼수 수급자에 1조 혈세 '줄줄'	인터넷신문
제2024-895호	데일리중앙	9월 29일	뉴스면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은 눈먼돈? 5년여 간 부당수령 5122건 1848억원	인터넷신문
제2024-896호	동양일보	10월 30일	04면(종합)	보조금 '눈먼 돈'... 세종 시민단체 무더기 적발	지역일간지
제2024-897호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29일	지역면	세종시 '보조금은 눈먼 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무더기 적발	인터넷신문
제2024-898호	만지일보	10월 2일	기사면	초범이니까 괜찮아 3 : 대사관을 떠도는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899호	매경닷컴	10월 4일	사회면	年 300억 썼다 ...'눈먼돈' 실업급여	인터넷신문
제2024-900호	매일경제	10월 5일	01면(사회)	年 300억 썼다 ... '눈먼돈' 실업급여	중앙일간지
제2024-901호	범죄예방신문 방송	10월 6일	뉴스면	줄줄새는 실업급여 年 300억 눈먼돈으로	인터넷신문
제2024-902호	보험매일	11월 13일	종합뉴스면	차보험 환자 '눈먼 돈'으로 보는 한의원에 보험금 '줄줄'	인터넷신문
제2024-903호	인터넷 세계일보	10월 16일	비즈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눈먼 돈?...42억 '꿀꺽' 후 환수 안 돼	인터넷신문
제2024-904호	스포티비뉴스	10월 20일	연예면	정대세, 승부욕에 눈 멀었다...'육상 카리나' 김민지에 도발(생존왕)	인터넷신문

■ 제2024-88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905호	아이굿뉴스	9월 12일	기획면	[연중기획] “코인만이 탈출구” ... ‘인생 한방’에 눈 먼 청년들	인터넷신문
제2024-906호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10월 17일	열린뉴스면	시장님! 도로에 주차장 조성 웬말...눈먼 행정 도마 위	인터넷신문
제2024-907호	충북일보	9월 25일	02면(종합)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	지역일간지
제2024-908호	충청타임즈	9월 19일	03면(종합)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은 눈먼 돈?	지역일간지
제2024-909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9월 18일	사회면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은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4-910호	쿠키뉴스	10월 18일	사회면	압수된 현금은 눈먼 돈?...강남서 이어 용산서에서도 경찰이 빼돌려	인터넷신문
제2024-911호	텐아시아	10월 21일	드라마·예능면	정대세, 빚 20억 있다면서...승부욕에 눈 멀었다 "5만원이라도 내겠다" ('생존왕')	인터넷신문
제2024-912호	프레스리안 (Pressian)	9월 23일		해양수산지원금은 '눈먼 돈'...완도군, 굴 양식 안하는 어촌계에 수억씩 지원	인터넷신문
제2024-913호	인터넷 한국공보뉴스	11월 10일	정치/경제/ 사회면	[김만규의 시선] 용산구, 예산이 눈먼 돈인가...수의계약 관행의 민낯	인터넷신문
제2024-914호	한국섬유신문	11월 6일	ESG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눈먼 돈 줄줄”...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4-915호	언론사명	(주)동아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동아닷컴 2024년 10월 30일 사회면 「“자녀 취직 걱정마” 울산서 23억 챙긴 전 노조간부 경찰수사에 극단선택」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표현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자살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묘사될 수 없으며,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위기에 노출된 불특정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비록 해당 표현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관용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으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91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916호	뉴스1코리아	11월 3일	사회면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으로 극단 선택..."신을 내뱉라" 2차 가해	뉴스통신
제2024-917호	뉴스제주	10월 24일	사회면	제주 공원서 대낮 흉기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918호	대전투데이	10월 16일	07면(사회)	충남플랜트노조, 간부 극단적 선택 파장 일파만파	지역일간지
제2024-919호	인터넷 대전투데이	10월 15일	종합뉴스면	충남플랜트노조, 간부 극단적 선택 파장 일파만파	인터넷신문
제2024-920호	인터넷 무등일보	10월 18일	사회면	[단독] 업무 스트레스 호소...장흥서 50대 현직 경찰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921호	백세시대	10월 31일	경제면	서해종합건설, 하청업체 간부 투신 '극단적 선택'...공사비 미지급 원인?	인터넷신문
제2024-922호	인터넷 세계일보	11월 3일	사회면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으로 극단 선택..."신을 내뱉라" 2차 가해	인터넷신문
제2024-923호	인터넷 이데일리	10월 22일	사회면	실종 신고 이틀 만에 발견된 '동거녀'...건물서 극단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924호	인터넷 전남일보	10월 6일		광주시교육청 노조 "공무원 극단 선택, 진실 규명해야" 촉구	인터넷신문
제2024-925호	조선닷컴	10월 26일	사회면	정읍 아파트에서 화재로 60대 남성 숨지고 주민 대피..."극단적 선택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4-926호	지디넷코리아	10월 24일	컴퓨팅면	'왕좌의 게임' 캐릭터 아니었어?...AI 챗봇과 대화하던 美 소년,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24-927호	충청매일	10월 24일	03면(사회)	'극단 선택 피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4-928호	언론사명	문정민(메디컬라이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메디컬라이프 2024년 10월 17일 의료면 「임플란트 통증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적은 짧은 수술시간」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과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보도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별첨 기사 박스처리 부분 참조)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 기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의료기관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제2024-92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 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4-929호	시민뉴스	10월 17일		임플란트 통증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적은 짧은 수술시간	인터넷신문
제2024-930호	한국공공정책신문	10월 17일		임플란트 통증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적은 짧은 수술시간	인터넷신문
제2024-931호	광남일보	10월 11일	14면(인물)	○○○○○치과, 농성동으로 확장·이전	지역일간지
제2024-932호	인터넷광남일보	10월 10일	피플면	○○○○○치과, 광주 서구 농성동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933호	광주매일신문 (光州毎日新聞)	10월 14일	18면(인물)	○○○○○치과, 서구 농성동 확장 이전	지역일간지
제2024-934호	인터넷광주매일신문	10월 13일	사람들면	○○○○○치과, 서구 농성동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935호	무등일보	10월 11일	17면 (인물)	○○○○○치과 확장 이전 진료 의자 19개로 증설	지역일간지
제2024-936호	인터넷이뉴스투데이	10월 10일	전국면	○○○○○치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건너편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937호	전남매일 (全南毎日)	10월 11일	17면(인물)	○○○○○치과의원, 농성동으로 확장 이전	지역일간지
제2024-938호	인터넷전남일보	10월 13일	의료건강면	○○○○○치과, 농성동 라페스타 건너편으로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939호	뉴스퀘스트	9월 24일	정치/사회면	K-실리프팅 특화 의료기관 '○○의원', 다음 달 확장 이전 결정	인터넷신문
제2024-940호	디지털조선일보	9월 24일	경제면	K-실리프팅 특화 의료기관 '○○의원' 내달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4-941호	보건뉴스	9월 24일	종합면	○○클리닉, 확장·이전 새 도약 준비… "미용의료 입지 강화"	인터넷신문
제2024-942호	팜뉴스	9월 24일	의약계소식	○○클리닉(○○의원),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